world anti-doping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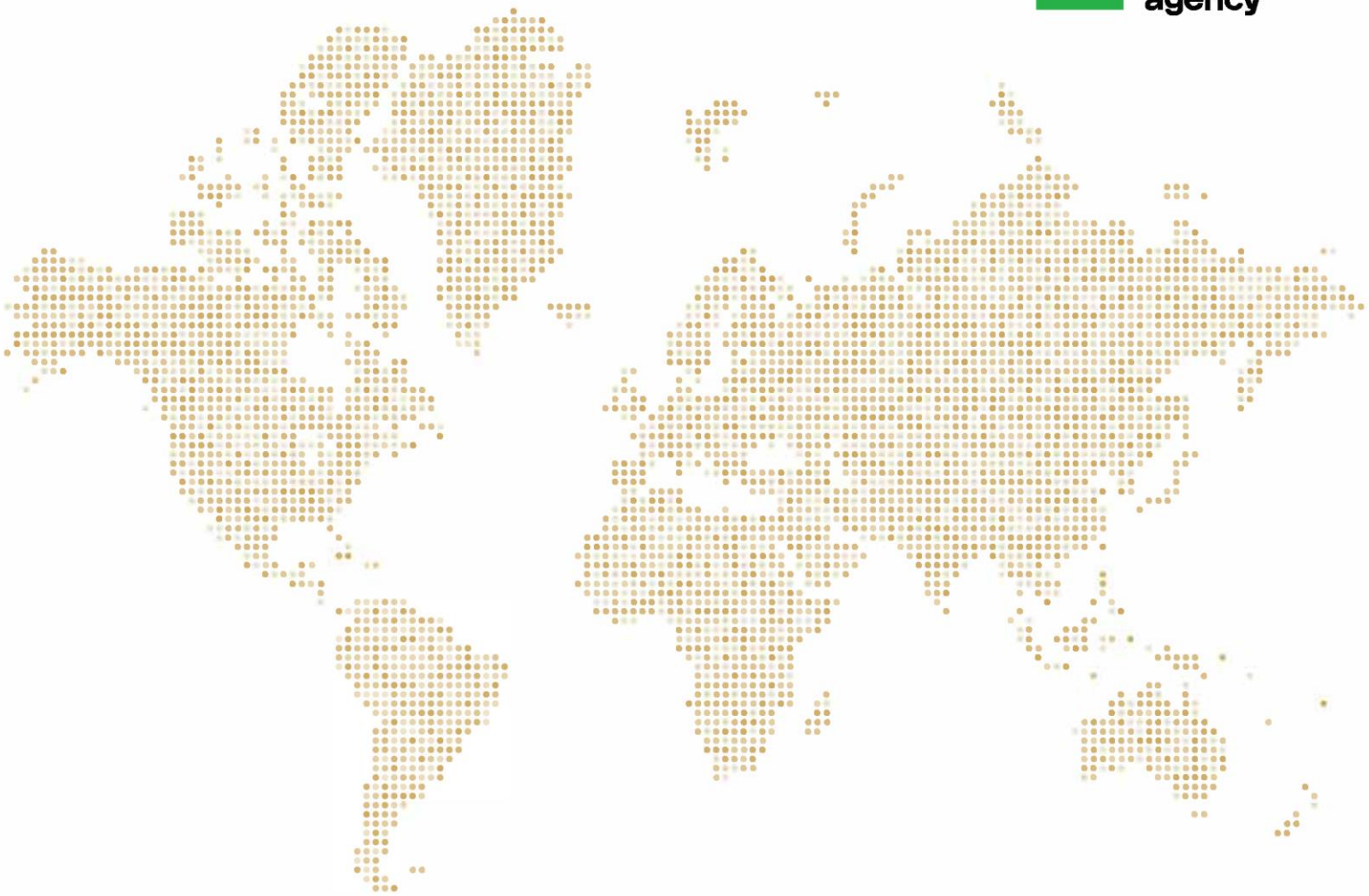

WORLD ANTI-DOPING CODE

INTERNATIONAL STANDARD

CODE COMPLIANCE BY SIGNATORIES

2024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본 *가맹기구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은 의무적 *국제표준*으로서 세계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본 *국제표준*은 *가맹기구*, 공공기관, 여타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다.

본 *국제표준*은 2017년 11월 15일 *WADA*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8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가맹기구*의 모든 비준수 사례에 적용된다. 개정본은 2019년 11월 7일 카토비체에서 열린 세계 도핑방지 컨퍼런스에서 *WADA*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본 재개정본은 2016년 11월 16일 *WADA*집행위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유효하다.

발행처:

세계*도핑방지기구*
Stock Exchange Tower
800 Place Victoria (Suite 1700)
PO Box 120
퀘벡, 몬트리올
캐나다 H3E 0B4

www.*WADA*-ama.org

Tel: +1 514 904 9232
Fax: +1 514 904 8650
E-mail: code@*WADA*-ama,org

목차

제 1장 개요, *규약* 조항, *국제표준* 조항, 용어의 정의 5

1.0 개요 및 범위 5

3.0 정의 및 해석 6

3.8 해석 15

제2장: *WADA*의 모니터링 및 가맹기구 *규약*준수 집행에 대한 표준 16

4.0 목적 16

5.0 WADA 준수 모니터링 기능과 관련된 다른 기관들의 역할, 책임 및 절차 16

5.1 규약준수 운영 감독 18

5.2 독립적 검토 및 권고 18

5.3 독립적 비준수 및 가맹기구 결과조치 결정 19

5.4 최후의 수단 원칙 20

도표 2: 비준수 공식 선언에 뒤따르는 과정을 묘사한 절차도(5.3.1 항, 5.3.2 항 및 5.3.3 항) 21

6.1 목적 22

6.2 운영상 및 기술적 지원 22

7.1 목적 23

7.3 다른 기구와의 협력 25

7.5 규약준수 설문지 28

7.6 의무적 정보요구 28

7.7 준수감사 프로그램 29

7.8 프로그램 분야 모니터링 32

8.1 목적 35

8.2 시정조치보고 및 시정조치계획 35

8.3 CRC 회부 전 시정할 최종 기회 36

8.4 CRC로 회부 37

8.5 신속처리 절차 38

8.6 불가항력적 사건 40

9.0 비준수 확인 및 가맹기구 결과조치 부과 40

9.1 CRC 권고 40

9.2 WADA 집행위원회의 심리 41

9.4 CAS의 결정 43

10.2 특정 사례에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 결정과 관련되 원칙 46

11.0 재인가 49

11.1 목적 49

12.0 경과 규정 52

12.1 2024년 4월 1일부로 계류 중인 절차 52

부록 A: 비준수 분류 53

부록 B: *가맹기구* 결과조치 58

제 1장 개요, *규약* 조항, *국제표준* 조항, 용어의 정의

1.0 개요 및 범위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의 목적은 *가맹기구*에 의한 *규약*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세계도핑방지*규약*(이하 "*규약*") *가맹기구*는 *규약*과 그에 따른 여러 *국제표준*에 제시된 여러 법적, 기술적, 운영상의 요건을 필히 준수한다. 이는 *선수*들과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스포츠가 개최되는 곳 어디서나 도핑 없는 공평한 *경기*장을 경험하도록 국제 및 국내 수준의 조화와 협조 속에서 효과적인 도핑방지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규약*에 따라, *WADA*는 *가맹기구*들이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모니터하고 강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규약*에 따라 *가맹기구*들은 *WADA*에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WADA*에서 제기한 위반 혐의 및/또는 *WADA*에서 제안한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가맹기구*에 대해 위반을 결정하고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부과할 책임은 *WADA*가 아니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게 있다

*가맹기구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 *WADA*의 *규약준수* 모니터링 기능과 관련된 서로 다른 기구의 역할, 책임, 절차(제2장 5조)
- *WADA*의 *가맹기구 규약준수* 노력 지원 및 도움(제2장 6조)
- *가맹기구*의 *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른 의무사항의 준수를 모니터 할 *WADA*의 수단(제2장 7조)
- 공식 조치 이전에 *WADA*가 *가맹기구*에게 제공할 시정 기회와 지원(제2장 8조)
- *가맹기구*가 *부적합*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CAS*가 비준수의 주장과 그러한 비준수로 인한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결정하는 절차. 이 절차는 적절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약* 비준수 결정과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그러한 불이행의 결과를 반영한다. (제2장, 9조 및 10조; 부록 A 및 B)
- *CAS*가 특정 경우에 부과할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칙 (제2장, 10조, 부록 A 및 B)
- *WADA*가 비준수로 결정된 *가맹기구*가 비준수를 수정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인가*하도록 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 (제2장, 11조); 그리고

  2021년 1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제2장, 12조)

궁극적인 목적은 *규약*을 준수하는 강력한 도핑방지 규칙과 프로그램이 일관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든 스포츠와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깨끗한 *선수*들이 공평한 *경기*장에서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한편, 대중이 스포츠의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기구*의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은 유연하게 특정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특히, 본 *국제표준*은 특정 조항(특별 신속 처리 절차를 포함)을 포함함으로써 *WADA*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규약*의 *중대한* 요건을

불충실하게 고의적 및/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국제표준*은 *WADA*가 특정 지역 그리고/또는 특정 *가맹기구*에 대하여 준수 노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규약*을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가맹기구*는 전체 *규약준수*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촉진, 지원받을 것이다. *규약준수*에 따른 문제들은 *가맹기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 *가맹기구*에게 비준수를 선언하고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기구*가 *부적합*을 시정하는 데 실패했을 때에만 취해진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WADA*는 전반적인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에서 최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표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활동의 대상이 된 개별 *가맹기구*와 관련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본 *국제표준*에서 사용된 용어들 가운데 *규약*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본 *국제표준* 또는 여타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밑줄로 표시한다.

2.0 *규약* 및 분석기관 *국제표준* 관련 조항

다음 *규약* 내 조항은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규약*을 참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12조 기타 스포츠 단체에 대한 *가맹기구*별 제재
- 13.6항 24.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항소
- 20조 *가맹기구* 및 *WADA*의 추가적인 역할 및 책임
- 24조 *규약* 및 유네스코 협약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집행

분석기관 *국제표준* 내 다음 조항은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분석기관 *국제표준*을 참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4.1.2항 분석기관 신청, 초기신청서 제출
- 4.8.1.2항 ABP를 위한 *WADA* 승인 분석기관 신청, 초기신청서 제출.

3.0 정의 및 해석

3.1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규약*에 정의된 용어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은 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도핑방지활동*을 시행하는 가맹단체와 *WADA*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보를 입력, 저장, 공유 및 통보하는 웹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수단을 말한다.

비정상분석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 「분석기관 *국제표준*」 및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에서 *금지성분*,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금지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WADA* 인증 분석기관 또는 기타 *WADA*가 인가한 분석기관 보고를 말한다.

비정상수첩결과(Adverse Passport Finding): 적용되는 *국제표준*에서 설명하는 *비정상수첩결과*를 확인하는 보고를 말한다.

가중처벌 요소(Aggravating Factors)*:* 고의로 *규약* 또는 *국제표준*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행위, 도핑방지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행위, 위반을 은폐하려는 행위, 그 외 해당 *가맹기구*의 불성실 행위, *가맹기구*가 *WADA*에서 통보받은 *부적합*의 시정을 거듭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거듭 위반하는 경우, 그 외 *가맹기구*의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 미준수를 악화시키는 요소를 말한다.

도핑방지활동(Anti-Doping Activities)*:* 도핑방지*교육*과 정보, 시험배분계획, *검사대상명부* 관리, *선수생체수첩* 관리, *검사* 실시, *시료* 분석 준비, 정보 수집, 조사 실시, *TUE* 신청 처리, *결과관리*, 청문, 부과된 *결과조치*의 준수 모니터링과 집행, 그 외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기구*가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해야 하는 도핑방지 관련 활동을 말한다.

도핑방지기구(Anti-Doping Organization): *도핑관리과정*의 전 부분을 주관, 실시 또는 시행하기 위한 규정의 채택에 책임이 있는 *WADA* 또는 *가맹기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기타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WADA*, 국제*경기*연맹 및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제3자(Approved Third Party)*: WADA*가 위반 *가맹기구*와 협의한 후 그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을 일부 또는 전부 *감독하거나 인수할* 주체로 선택하거나 승인한 *도핑방지기구* 및/또는 *위임받은 제3자*(단수 또는 복수)를 말한다. 적합한 기구가 따로 없다면 최후 조치로 *WADA*가 직접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선수(Athlete): *국제수준*(각 국제*경기*연맹이 정하는 바와 같다) 또는 *국내수준*(각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정하는 바와 같다)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도핑방지기구*는 *국제수준의 선수*도 아니고 *국내수준의 선수*도 아닌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정을 적용하고 그들을 *"선수"*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

[선수에 대한 주해: 스포츠에 참가하는 개인은 5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할 수 있다: 1) 국제 수준의 선수, 2) 국내 수준의 선수, 3)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선수는 아니나 국제 연맹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개인, 4) 레크리에이션 선수, 5) 국제연맹이나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기로 선택한 개인. 모든 국제 또는 국내 수준의 선수는 국제연맹 및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 및 국내 수준 스포츠의

정확한 정의와 함께 규약의 도핑방지규칙을 따라야 한다.]

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그리고 「분석기관 *국제표준*」에서 명시한대로 데이터를 수집 및 대조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을 말한다.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치료하거나, 지원하거나, 함께 일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요원, 임원, 의무요원, 준의료요원, 부모 또는 기타 *사람을* 말한다.

비정형분석결과(Atypical Finding): 비정상분석결과로 결정하기 전에 「분석기관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조사가 요구된다는 *WADA* 인증 분석기관 또는 기타 *WADA* 인가 분석기관의 보고를 말한다.

***CAS*:** 스포츠 중재재판소

Code: 세계도핑방지*규약*

도핑방지규정위반 결과조치("결과조치"): *선수* 또는 기타 *사람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하나 이상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a) *실효* - 특정 *경기*나 대회에서 *선수*가 받은 성적을 무효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 결과로 받은 메달, 점수, 상을 박탈하는 등의 *결과조치* (b) *자격정지* – *규약* 10.14.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경기*나 활동, 자금지원을 받는 행위 등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c) *임시자격정지* – *규약* 8조에 따른 청문회의 최종결정에 앞서, *선수*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모든 *경기* 또는 활동 참가를 잠정 금지하는 조치 (d) *금전적 부과조치* -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라, 금전적 *결과조치*를 내리거나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는 조치 (e) *일반공개* - 일반 대중 또는 14조에 따라 조기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실 및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조치. *단체경기*의 경우, 해당 팀에 대해서도 *규약* 11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결과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Critical)*:** 스포츠에서 도핑 근절에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요건을 말한다.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A를 참조한다.

위임 받은 제3자: *도핑방지기구*로부터 *도핑관리* 또는 도핑방지 *교육프로그램*의 제반 활동을 위임 받아 *시료*채취 또는 *도핑관리*,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제3자나 기타 *도핑방지기구*, 또는 *도핑방지기구*의 *도핑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계약된 개인(예, *도핑방지기구*의 직원이 아닌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을 말한다. 여기에 *CAS*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핑관리(Doping Control): *검사*, 조사, 소재지 정보, *TUE*, *시료*채취와 취급, 분석기관 분석, *결과관리*,

청문과 항소, *규약* 10.14항(*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기간 중 신분)의 위반과 관련된 조사 또는 절차 등 *검사*배분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항소와 *결과조치*의 시행에 이르는 단계와 절차 일체를 말한다.

***교육**:* 스포츠 정신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도핑을 방지하는 행동을 개발하고, 가치를 함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경기대회(Event): 하나의 주관단체 하에서 함께 진행되는 일련의 개별*경기*(예: 올림픽*경기*, 국제연맹의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범 미주대회)를 말한다.[1]

벌금: 위반*l가중처벌 요소*의 심각도, 그 존속기간, 향후 유사한 행위를 못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가맹기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대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a) *가맹기구* 연간 총지출예산의 10%와 (b) 미화 US$100,000 중 적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벌금*은 *WADA*가 *규약준수* 모니터링 활동이나 도핑방지 *교육*, 도핑방지 연구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인(General)**:* 스포츠 도핑의 근절에 중요하지만 *중대한* 또는 *우선순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요건을 말한다.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부록 A를 참조.

***우선순위의(High Priority)**:* 스포츠 도핑 근절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범주로 여겨지지 않는 요건을 말한다.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부록 A를 참조.

독립관찰프로그램(Independent Observer Program): *WADA*의 감독 하에 *WADA*의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부로 특정 *경기대회* 전과 *경기대회* 중에 *도핑관리*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안내하며 모니터링결과를 보고하는 모니터링단 및/또는 감사단을 말한다.

국제경기대회(International Event):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기타 국제체육단체가 해당 *경기대회*의 주관단체이거나 해당 *경기대회*의 기술임원을 임명하는 대회를 말한다.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규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WADA*가 채택한 표준을 말한다. *국제표준*(다른 대안적 표준, 관행 또는 절차에 대립되는)의 준수는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가 합당하게 이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모든 *기술문서*를 포함한다.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Major Event Organizations):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대륙간 연합체 및 어떤 대륙, 지역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의 주관단체로 기능하는 기타 국제종합체육단체를 말한다.

[1] 본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의 부록 B에서 '경기대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위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추가로 경기대회가 '부속서 B의 목적상 '경기대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맹기구*의 권한 하에 있어야 한다.

국가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국내수준에서 도핑방지규정의 수립과 시행, *시료*채취의 지휘, 검사결과의 관리와 *결과관리 국제표준*을 시행할 최고 권한과 책임을 해당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정부 당국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구가 *국가도핑방지기구*가 된다.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라는 용어에는 도핑방지 분야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갖는 고유의 책무를 국가체육회가 가지는 나라에서는 국가체육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적합(Non-Conformity)*: 가맹기구*가 *규약*이나 하나 이상의 *국제표준* 또는 *WADA* 집행위원회에 의해 요구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서 부여한 부적합 (단수 또는 복수)을 시정할 기회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WADA*에서 *가맹기구*가 비준수라고 공식 언급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당사자(Person): 자연*인* 또는 조직 또는 여타 단체

일반공개(Publicly Disclose): *도핑방지규정위반 결과조치* 참조

검사대상명부(Registered Testing Pool): 국제연맹에 의해 입증된 국제수준과 *국가도핑방지기구*에 의해 입증된 국내수준의 최상위 *선수*명부를 말한다. 여기에 속한 *선수*들은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검사배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약* 5.5항과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른 소재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인가(Reinstatement)*: 규약*이나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받은 *가맹기구*가 비준수를 시정하고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11조에 따라 *규약준수 가맹기구* 목록에 해당 *가맹기구*의 이름을 *재인가*하기 위하여 부과된 *재인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재인가* 상태는 그에 따라 해석한다.)

대표자(Representative)*:* 문제의 *가맹기구* 또는 기타 단체에 속한 공직자, 임원, 간부, 선출직 구성원, 직원,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국가도핑방지기구*나 *국가도핑방지기구* 임무를 대행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국가도핑방지기구*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소속 국가의 정부 *대표자*도 여기에 속한다.

결과관리(Results Management)*:* 「*결과관리 국제표준*」 5조에 따른 통지 또는 특정 경우 (예, 비정형분석결과, *선수생체수첩*,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에 따라 「*결과관리 국제표준*」 5조에 명시된 통지 전 단계부터 혐의통지, 해당 건의 최종 결정(최초결정 또는 항소를 통한 청문의 종료 포함)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시료 또는 표본(Sample or Specimen): *도핑관리*의 목적으로 채취된 생물학적 물질을 말한다.

[시료 또는 표본에 대한 주해: 혈액 시료 수집이 특정 종교 또는 문화 집단의 교리를 위반한다는 주장이 가끔 제기되었으나,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맹기구(Signatories): 23조에서 규정한 대로 *규약*에 서명하고 *규약준수*에 동의한 기구들을 말한다.[2]

특별 모니터링(Special Monitoring)*: WADA*가 위반 *가맹기구*에 부과된 *결과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에서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상황을 말한다.

감독(Supervision)*: 승인받은 제3자*가 위반 *가맹기구*에게 부과된 *결과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을 *WADA*의 지휘에 따라 *가맹기구*의 부담으로 관찰하고 감독(의미는 별도 해석에 따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맹기구*가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승인받은 제3자*와 감독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기구*는 *승인받은 제3자*가 관찰하고 감독할 분야에서 *WADA*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도핑방지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책임이전(Takeover): 승인 받은 *제3자*가 비준수 *가맹기구*에게 부과된 *결과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을 *WADA*의 지휘에 따라 *가맹기구*의 비용부담으로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맹기구*가 비준수 판정을 받았지만 승인 받은 *제3자*와 책임이전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기구*는 *승인받은 제3자*가 책임을 이전할 분야에서 *WADA*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도핑방지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표적검사(Target Testing):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를 위하여 특정

[2] 본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의 목적상, *가맹기구*가 후임기관으로 교체되는 경우(WADA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후임기관은 후임기관의 역할 또는 규약에 따라 해당 *가맹기구*의 대체 기관임을 수락함으로써 (1) 규약준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임 *가맹기구*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그리고 (2) 규약준수 문제에 대해 (모든 결과조치에 구속되고 결과적인 재인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임 *가맹기구*의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목적상의 '규약준수 문제'는 교체 이전에 발생했지만 준수 절차가 (a) 교체 시점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b) 교체 시점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즉, 주장되는 비준수 사항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또는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결과조치가 아직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경우) 및/또는 부과된 재인가 조건이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모든 비준수를 의미한다. *가맹기구*가 둘 이상의 후임기관으로 교체되는 경우, 후임기관 중 하나가 규약준수 문제와 관련하여 전임 *가맹기구*의 권리를 취득하고 책임을 진다는 합의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체결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후임기관은 규약에 따라 해당 *가맹기구*의 부분적인 승계 또는 교체 역할을 수락함으로써 다른 후임기관과 공동으로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러한 책임을 맡은 것으로 간주된다.

*선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 *국제표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한 도핑방지주제에 대한 의무적인 기술요구사항을 포함하는 *WADA*에서 채택 및 발행하는 문서

검사(Testing): *검사*배분계획 수립, *시료*채취, *시료*관리 및 분석기관으로의 *시료*운송 등 *도핑관리*절차를 말한다.

치료목적사면책(TUE): *치료목적사용면책*에서는 질환이 있는 *선수*에게 *금지성분*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용한다. 단 *규약* 4.4항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한한다.

UNESCO 도핑방지협약(UNESCO Convention): 2005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협약 당사국회의와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사항이 포함된다.

***WADA*:** 세계도핑방지기구

3.2 *교육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용어

***교육*계획(Education Plan):** 상황평가, *교육*그룹 선정; 목적; *교육국제표준* 4조에서 요구하는 *교육*활동 및 모니터링 절차를 포함하는 문서
***교육*그룹(Education Pool):** 평가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표적 그룹을 나타내는 명단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Program)**: 의도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기구*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의 집합이다.

***교육자* (Educator)**: *교육*을 제공하도록 훈련을 받았으며 이 목적을 위해 *가맹기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가치기반*교육* (Values-Based Education): 개인의 개인적 가치와 원칙 개발을 강조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전달하는 행위.

3.3 분석기관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용어

***선수*수첩관리단(Athlete Passport Management Unit):** 수첩관리기구를 대신하여 *ADAMS* 내 *선수생체수첩*을 적기에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3.4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용어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활동* 맥락에서만 처리되는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하게 하는 참가자 또는 기타 관계자의 정보와 관련된 민감개인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주해: 개인정보에는 선수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및 소속 스포츠, 소재지, 지정된 TUE(있는 경우), 도핑 테스트결과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징계 청문회, 항소 및 제재 포함)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정보에는 도핑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수와 함께 일하고,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및 기타 인원과 같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연락처 정보도 포함된다. 그러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유지되며 해당 개인이 조직화된 스포츠에 계속 참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처리 기간 동안 본 국제표준에 의해 규제된다.]

3.5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용어

_시료_보관전달체계(Chain of Custody): *시료*의 제출부터 *시료*가 분석을 위해 분석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시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들의 연속성.

사전 미통지 _검사_(No Advance Notice Testing): *선수*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시료* 채취로 샤프롱이 통지에서부터 *시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선수*를 동행한다.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4.2항에 따라 *도핑방지기구*가 종목 또는 세부종목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_시료_채취기구(Sample Collection Authority):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건에 맞춰 *시료*의 채취를 책임지는 조직으로 (1) *검사주관기구* 자체나; (2) *검사주관기구*가 해당 책임을 맡기거나 그러한 책임을 *위임받은 제3자*. *검사주관기구*가 *규약* 하에서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건이 준수될 것에 대해 항상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_시료_ 채취 용품(Sample Collection Equipment): 6.3.4항에 맞춰 진행되는 *시료* 채취 활동 중과 후 언제라도 *시료*를 채취하거나 담고 있거나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A병 및 B병이나 키트, *시료*채취용기, 튜브 또는 다른 기구들

_시료_ 채취 요원(Sample Collection Personnel): *시료*채취기구로부터 *시료* 채취기간 동안 *시료* 채취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자격을 갖춘 담당자들을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용어

_시료_ 채취 활동(Sample Collection Session): 최초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선수*가 자신의 *시료*를 제출하고 *도핑관리실*을 떠나는 시점까지 *선수*와 직접 연관되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_검사_배분계획(Test Distribution Plan):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4조의 요건에 따라 *도핑방지기구*가 *검사* 권한을 가진 *선수*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작성한 문서.

3.6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정의된 용어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또는 "*TUEC*"):** *TUE*신청을 고려하기 위하 *도핑방지기구*가 구성한 패널

3.7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재표준에서 특별히 정의된 용어

도핑방지프로그램(Anti-Doping Program): *규약*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기구*가 시행해야 하는 법령, 규정, 법규, 과정 및 절차, 그리고 여타 활동(*도핑방지활동* 포함)

***규약준수*(Code Compliance):** 해당 *가맹기구*에 적용되는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표준*의 모든 요건 준수

***규약준수*설문지(Code Compliance Questionnaire)**: *가맹기구*가 *가맹기구*의 *규약준수*에 관해 *WADA*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WADA*가 발행한 설문지 형태의 자기평가조사

준수감사(Compliance Audit): *WADA*가 7.7항에 따라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평가

준수검토위원회(Compliance Review Committee, CRC): 5.2.1항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가맹기구*가 작성하는 계획으로, *가맹기구*가 *WADA*에 의해 시정조치보고에서 확인된 시정조치를 해1당 보고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시정조치보고(Corrective Action Report): *가맹기구*에 의한 *부적합, 부적합*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기구*가 취해야 할 시정조치, 그리고 그러한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시켜주는 보고로 *WADA*가 작성한다.

불가항력적 사건(Event of Force Majeure): *가맹기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행위, 사건, 부작위,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그에 기인하는 *가맹기구*의 충실한 *규약*준수 달성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건. 그러한 사건에는 어떠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재난, 전쟁, 군사 작전, 폭동, 군중의 무질서, 파업, 직장폐쇄 또는 여타 산업적 행위, 테러 행위, 내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부적합*을 면제하거나, *부적합*에 대해 부과될 *결과조치*를 완화하거나, *재인가* 조건의 불충족을 면제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부적합*이 자원 부족, 선출된 공무원이나 직원의 변경, 정부 또는 기타 공공단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간섭 및/또는 지원 제공 실패 포함)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각 *가맹기구*는 *규약* 23.3 항에 따라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의무와 (해당되는 경우)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의 지원을 확보할 의무를 포함하여 *규약* 및 국제 표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락하였으며 이는 *규약*준수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는

(2) *가맹기구*가 규정 및/또는 *국제표준*에 따른 자신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수하는 일을 위임된 제 3 자 (예: *가맹기구*가 *시료* 수집 업무를 할당한 *시료* 수집 기관, 또는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해당 *경기대회*에서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임무를 맡은 현지 조직위원회)에게 위임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건에 대한 주해: CAS가 RPC v IPC, CAS 2016/A/4745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a) 권한 범위 내에서 규약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모든 위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자신이 의존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기관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도 그러하며, (b) 선수가 자신의 도핑방지의무 준수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더라도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가맹기구 역시 규약 및 국제 표준의 요건을 준수할 절대적이고 위임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가맹기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작업을 적절한 제3자에게 할당할 권리를 포함하여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규정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의무적 정보요구(Mandatory Information Request): *WADA*가 *가맹기구*에 보낼 수 있는 요구로, *WADA*가 *가맹기구*의 *규약*준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맹기구*가 지정된 날짜까지 특정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순위 정책 (Prioritization Policy): 7.2항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특정 범주에 있는 *가맹기구*의 *규약*준수 모니터링 및/또는 특정 요구 사항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WADA* 관리가 제안하고 CRC가 승인한 정책이다.

***가맹기구* 결과조치(Signatory Consequences):** *규약*준수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로 *가맹기구*에게 부과될 수 있는 *규약* 24.1.12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결과조치로, 이러한 결과조치는 현재 사건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10조에 명시된 원칙이 적용된다.

***WADA* 감사관(*WADA* Auditor):** 적절한 경험이 있는 *WADA* 직원 또는 *WADA*에 의해 *가맹기구*의 *규약준수* 평가를 진행하는 훈련을 받은 외부전문가. *WADA* 감사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각 준수감사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관계 상충에도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WADA* 특권(*WADA* Privileges):** *규약* 24.1.12.1항에 나열된 혜택들을 일컫는다.

감시목록 절차 (Watchlist Procedure): 8.4.5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별절차.

3.8 해석

3.8.1 *가맹기구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의 정문은 *WADA*가 관리하며 영어와 프랑스어로 출간해야 한다. 영문판과 프랑스어판 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영문판이 우선된다.

3.8.2 *규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도 비례성 원칙, 인권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해왔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3.8.3 *가맹기구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의 다양한 조항에 대한 주해는 해석의 지침으로 사용한다.

3.8.4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조항 또는 부록에 대한 언급은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의 조항 및 부록에 대한 언급이다.

3.8.5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서 사용되는 "일"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달력일을 기준으로 한다.

3.8.6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의 부록은 *국제표준*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의무적 지위를 지닌다.

제2장: *WADA*의 모니터링 및 가맹기구 *규약*준수 집행에 대한 표준

4.0 목적

4.1 *가맹기구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 제2장의 목적은 *가맹기구*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규약*과 *국제표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핑방지프로그램을 시행함을 보장하여 모든 스포츠 *경기*가 동일한 경쟁조건 하에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4.2 *규약준수*에 따른 문제들은 *가맹기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 *가맹기구*를 비준수한 것으로 공표하고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진작에도 불구하고 *가맹기구*가 요구 기간까지 필수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만 취해진다.

4.3 따라서, *WADA*의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가맹기구*와 대화와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가맹기구*의 충실한 *규약*준수 노력을 돕고 *가맹기구*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도핑방지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경우, *가맹기구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은 *가맹기구*에게 *부적합*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리고 (만약 *부적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비준수의 결정과 예측 가능하고 차등 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한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부과로 이어지는 객관적이고, 예정된, 그리고 투명한 절차와 표준을 수립한다. 또한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은 *재인가*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5.0 *WADA* 준수 모니터링 기능과 관련된 다른 기관들의 역할, 책임 및 절차

도표 1: *부적합* 확인부터 비준수 선언 주장까지의 과정을 묘사한 절차도(5.1항부터 5.3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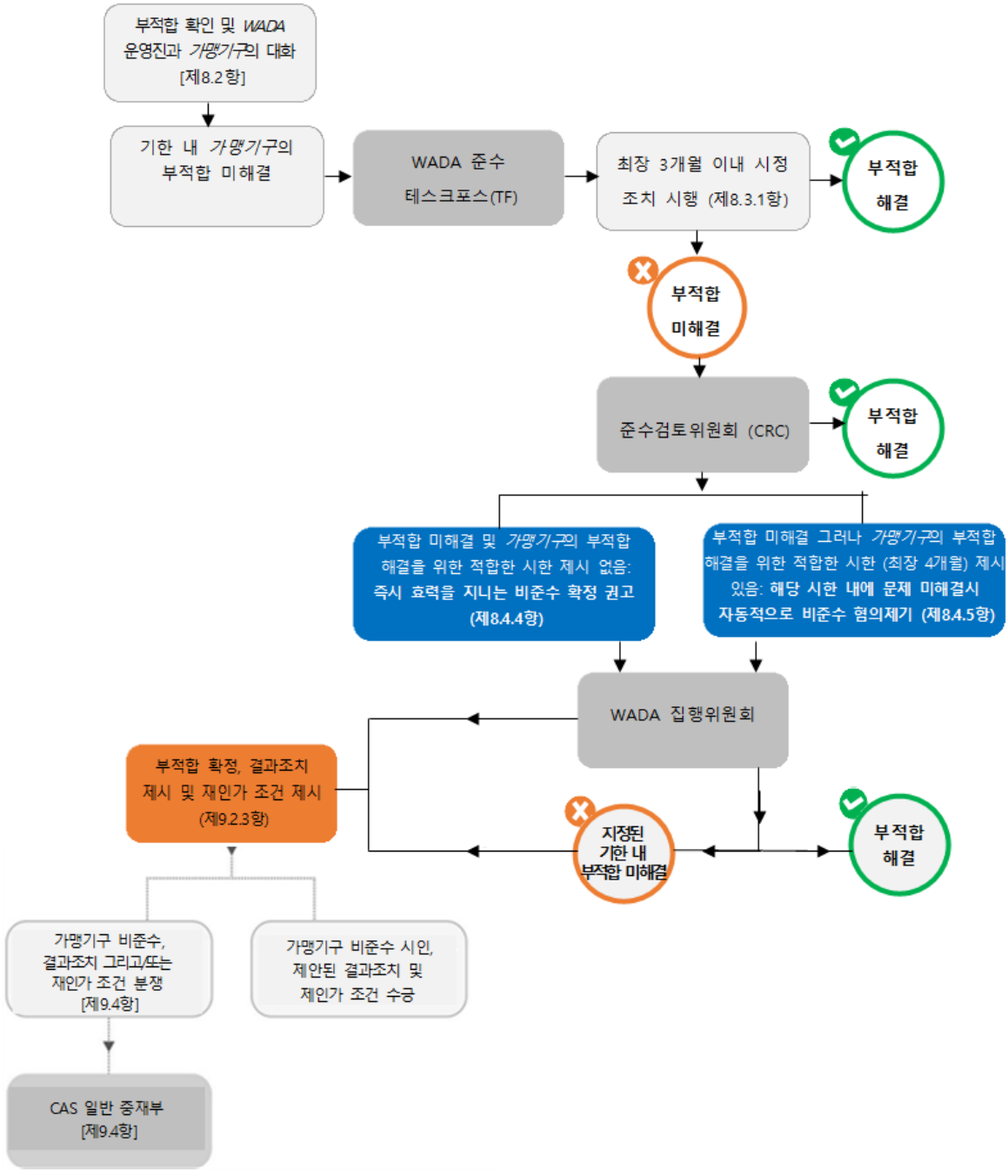

[3] 참고: 이 다이어그램은 시정조치보고가 없는 준수절차, 즉 규약준수질문서 또는 필수정보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발생하는 준수절차 또는 신속진행 준수절차를 설명하지 않는다. 제8.5항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5.1 *규약준수* 운영 감독

5.1.1 *규약준수*의 운영감독은 *WADA* 경영진에 의해 *WADA*의 다양한 부서 직원으로 이루어진 *WADA* 내 전담팀(TF)을 통해 제공된다.

5.1.2 경영진은 준수검토위원회(CRC)와 협력하여, 그리고 7.2항과 관련하여 CRC가 승인한 노력의 *우선순위*에 따라, *WADA*의 *규약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발전을 조정 및 지휘할 책임이 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5.1.2.1 *가맹기구*의 *규약*과 *국제표준*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WADA*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에 대한 규정 조정(6조 참조)

5.1.2.2 *가맹기구 규약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WADA*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사용, 도구에는 *ADAMS*, *규약준수*설문지, 의무적 정보요구, 준수감사, 프로그램 분야 모니터링으로 입수한 정보, 그리고 *WADA*가 얻거나 수집한 다른 관련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7조 참조)

5.1.2.3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가맹기구*와의 대화 개시, *부적합*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기구*가 취해야 할 시정조치 확인, 그리고 *가맹기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침 제공(8조 참조)

5.1.2.4 *가맹기구*의 시정조치가 *부적합*을 완전히 시정했는지를 평가하고, *부적합*이 완전히 수정되지 않은 사례를 CRC에 회부하고, 관련 지원 정보와 *WADA* 경영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CRC 토론을 촉진하고 CRC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CRC가 요청한 관찰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제공. (8조 및 9조 참조).

5.1.2.5 *가맹기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적합*을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CRC의 권고에 따라서, *WADA* 집행위원회로부터 *가맹기구*에 공식적으로 주장된 비준수 선언을 통지할 승인 획득, 해당 통지는 제시된 바로서 해당 비준수에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와 제시된 바로서 *가맹기구*가 *재인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또한 명시(8조, 9조, 10및 11조 참조), 그리고

5.1.2.6 부과된 *재인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맹기구*의 노력을 모니터링, 이는 *가맹기구*가 *재인가*되도록 추천할 시기와 여부를 CRC에 보고하기 위함이다(11조 참조).

5.2 독립적 검토 및 권고

5.2.1 준수검토위원회는 *WADA*의 *규약준수* 모니터링 노력과 강제 활동을 감시하는, 그리고 해당 문제에 관해 *WADA*의 집행위원회에 조언과 권고를 하는 독립적, 비정치적

WADA 상임위원회이다.

5.2.1.1 CRC는 업무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위원들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제정된 위임사항에 따라 관리된다. 위임사항에는 CRC 위원이 모든 잠재적 이해관계를 공표할 것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문제의 심의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이해관계 조항이 포함된다

5.2.2 CRC는 검토, 평가, 의견교환, 그리고 *규약준수* 및 *재인가*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WADA*에의 권고를 포괄하는 표준화된 절차를 따른다. 이 절차는(8조, 9조, 11조 참조) *규약준수*의 평가 및 강제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된 접근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5.2.2.1 *WADA* 경영진이 명백한 *부적합*을 CRC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가맹기구*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부적합*을 설명하고 해결하여 완전한 *규약준수*를 달성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절차가 뒤따른다(8조 참조).

5.2.2.2 만약 *가맹기구*가 절차의 체계 내에서 *부적합*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CRC는 해당 사례를 자세히 검토한 후 *WADA*의 집행위원회에 *가맹기구*에게 비준수를 선언하는 공식적인 통지를 하도록 권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5.3항 참조)

5.2.3 *WADA*가 제기하는 준수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더하여, CRC는 언제든 자발적으로 *WADA*에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준수 관련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5.3 독립적 비준수 및 *가맹기구 결과조치* 결정

5.3.1 *규약* 24.1.4항에 따라, CRC의 권고에 의해, *WADA*의 집행위원회는 *가맹기구*에게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표준*을 비준수했음을 선언하는 공식적인 통지를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통지는 해당 비준수에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와 제시된 바로서 *가맹기구*가 *재인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또한 명시한다.

5.3.2 *규약* 24.1.5항에 따라, *가맹기구*가 통지 수령 21일 이내에 통지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면, 비준수 선언은 자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가맹기구 결과조치*와 *재인가* 조건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규약* 9.3항에 따른) 통지는 *규약* 24.1.9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즉각 효력을 지니며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만약 *가맹기구*가 통지의 어떠한 부분에 논쟁하는 경우, 논쟁은 *규약* 24.1.6항에 따라 *CAS*에 의해 조정된다.

5.3.3 단 통지가 *가맹기구*에 의해 최종 결정으로 수용되었을 때, 또는 (논쟁되는 경우) 일단 CRC에 의해 최종 결정이 선포되었을 때, 만약 해당 결정이 *규약* 24.1.9항에 따라 *가맹기구*에게 부과되는 *결과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그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가맹기구*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인정 및 존중되며 시행되어야 한다. (아래 도표 2 참조)

5.4 최후의 수단 원칙

5.4.1 *가맹기구*가 *부적합*을 시정하는 데 요구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한 사례가 CRC 및 그 위로 회부되었지만 *CAS*가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부적합*을 시정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신속 절차인 경우에도 포함) '최후의 수단' 원칙과 일치하여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CAS*이전에 사건을 추진하는 데 비용이 발생(이 경우 *가맹기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한 경우 그리고/또는 요구된 기간 내 *부적합*을 시정하지 못하여 스포츠 도핑 근절 노력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그러한 손해를 반영하여 부과된다.)

도표 2: 비준수 공식 선언에 뒤따르는 과정을 묘사한 절차도(5.3.1항, 5.3.2항 및 5.3.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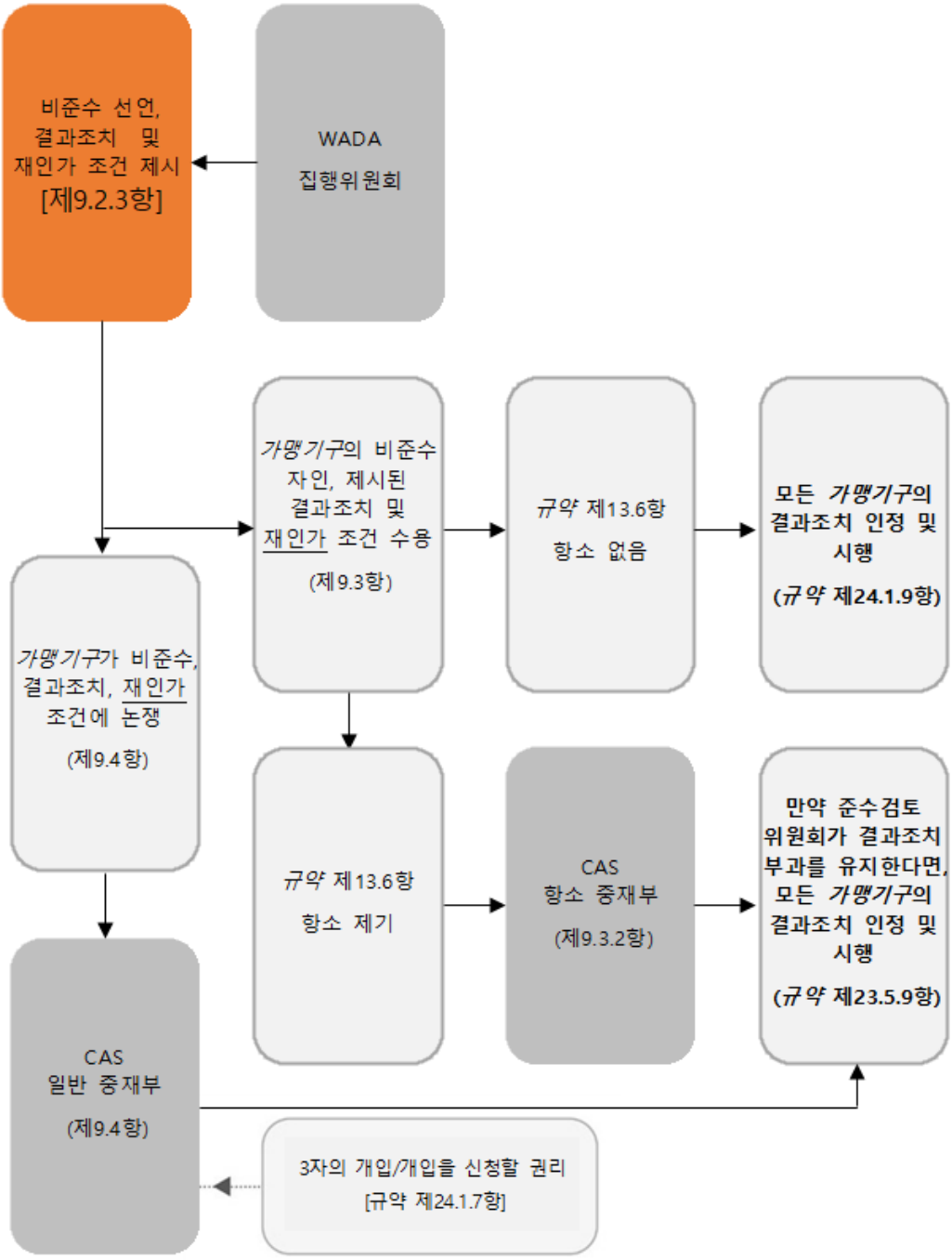

5.5 *재인가* 절차

5.5.1 적용되는 경우, *WADA* 경영진은 CRC에 *가맹기구*의 *재인가* 조건 시행에 관한 보고를 할 것이며, CRC회는 *WADA*의 집행위원회에 *가맹기구*가 조건을 충족하여 *재인가*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권고를 할 것이다

5.5.2 5.5.2 만약 *WADA*가 *가맹기구*가 아직 *재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아직 *재인가*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만약 *가맹기구*가 그 선언에 논쟁를 신청한다면, 논쟁는 *규약* 24.1.10항에 따라 *CAS*가 조정할 것이다. 24.1.9항에 따른 *CAS*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모든 *가맹기구*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행해야 한다.

6.0 *규약준수* 달성/유지 노력에 대한 *WADA*의 지원

6.1 목적

6.1.1 *WADA*의 *우선순위*는 *가맹기구*가 도핑방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여 도핑방지프로그램이 깨끗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보호를 증대하는 것이다. 완전한 *규약준수*를 달성하는 것은 항상 *가맹기구*의 의무로 남아야 하며, *가맹기구*의 준수에 대한 여타의 도움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나 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WADA*는 *가맹기구*가 완전한 *규약준수*를 달성하고, 유지하며,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6.2 운영상 및 기술적 지원

6.2.1 *WADA*는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 지침, 훈련 자료,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리고 가능한 경우 다른 *도핑방지기구*와의 동반자정신을 촉진함으로써 *가맹기구*가 완전한 *규약준수*를 달성하고, 유지하며, (적용되는 경우)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력할 것이다. *WADA*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해당 지원은 *가맹기구*의 부담금 없이 제공될 것이다.

6.2.2 *WADA*는 *가맹기구*가 *규약*과 *국제표준*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그 책임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을 포함하여 다수의 문서와 도구를 유지할 것이다.

6.2.2.1 *가맹기구*의 시행능력 범위 내에서의 *규약* 및 *국제표준*의 시행을 위한 모델 규정

6.2.2.2 *검사*, *TUE*, *결과관리*, *교육*, 정보활동 및 조사를 포함하는 *규약준수*를 위한 도핑방지프로그램의 다양한 요소의 시행을 아우르는 지침문서

6.2.2.3 양식 문서 및 서식, 그리고

6.2.2.4 온라인 *교육* 도구

6.2.3 *WADA*는 또한 *가맹기구*가 자신의 도핑방지프로그램 내에서 *부적합*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적합*을 시정하는 계획을 고안, 시행하는 것을 돕도록 설계된 *규약준수*설문지와 준수감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WADA*는 *가맹기구*가 *WADA*의 *규약준수*설문지와 준수감사 프로그램, 그리고 설명회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홈페이지 메뉴, 그리고 다른 지원 자원을 포함한 *WADA*의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다른 모든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조력을 제공할 것이다.

6.2.4 *가맹기구*는 다른 *가맹기구*로부터 완전한 *규약준수*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한 *WADA*는 *가맹기구*들이 그러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여기에는 동반자관계 협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지침을 홈페이지 상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는 *가맹기구*가 자신 대신 *도핑방지활동*을 수행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규약* 20조 및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8.4.3항에 따라 *가맹기구*는 그 결과로 발생할 어떠한 *부적합*에도 완전한 책임을 보유한다. 7.8항에 덧붙여, *가맹기구*는 제3자에게 *WADA*의 모든 준수 모니터링 노력에 대하여 *규약준수*설문지와 의무적 정보요구, 준수감사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분야 모니터링 요구사항에 (제한 없이) 적절히 따르는 것을 포함한 완전한 협조를 하도록 (그리고 *가맹기구*가 완전한 협조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6.2.5 8조에 명시된 대로, 작성된 *규약준수*설문지에서 또는 준수감사 또는 여타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WADA*의 초점은 대화와 지원을 통해 해당 *가맹기구*를 조력하여 완전한 *규약준수*를 달성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가맹기구*에게는 (필요한 경우) *WADA*가 필수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완료기간을 명시한 시정조치보고를 포함하여, *부적합* 논쟁 또는 해결 또는 시정할 적합한 기회가 주어진다. 시정조치보고는 또한 최상의 조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 *가맹기구*가 보고에 대응하고 자신의 도핑방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WADA* 홈페이지의 자원 및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아울러, *WADA*는 *가맹기구*가 제공한 시정조치계획(요청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의 목적에 부합함을 보장하는 의견을 제공할 것이다.

7.0 *가맹기구*의 *규약*준수 노력 모니터링

7.1 목적

규약 20.7.2항 및 24.1.1항에 의거한 *가맹기구*의 *규약준수*를 모니터할 의무에 따라, *WADA*는 *가맹기구*의 규정과 법규(그리고/또는 법령, 특정국에서 *규약*이 그러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규약* 및 *국제표준*을 준수함을 보장한다. *WADA*는 또한 *가맹기구*가 *규약* 및 *국제표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도핑방지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규정, 법규, 법령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조의 목적은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관리할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항상 모니터링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7.2 서로 다른 *가맹기구* 중 *우선순위*

7.2.1 다음 독립체들은 모두 *규약 가맹기구*가 될 수 있다:

7.2.1.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

7.2.1.2 기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

7.2.1.3 국제 *경기*연맹

7.2.1.4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가패럴림픽위원회

7.2.1.5 *국가도핑방지기구*; 그리고

7.2.1.6 스포츠와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 기타 조직.

7.2.2 다수의 *가맹기구*에 비해 제한된 *WADA*의 자원을 고려하여, CRC는 (a) *규약* 및 *우선순위* 정책에 따라 특정 부류의 *가맹기구*에게 요구되는 *도핑방지활동*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류의 *가맹기구*의, 그리고/또는 (b)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특정 *가맹기구*의 *규약준수* 모니터링을 *우선순위*화한다는 *WADA* 경영진의 제안을 승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일부 요인의 목록이다

7.2.2.1 (*가맹기구*가 국제연맹인 경우) 특정 스포츠/종목에서의 도핑의 생리학적 위험

7.2.2.2 (*가맹기구*가 국제연맹인 경우) *가맹기구*의 올림픽 그리고/또는 패럴림픽 참가

7.2.2.3 (*가맹기구*가 주요 국제대회 주관기구일 때) 그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의 수준)

7.2.2.4 *국제경기대회*에서의 특정 국가 *선수*의 *경기*력

7.2.2.5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스포츠/종목에서의 도핑의 역사

7.2.2.6 의무적 정보요구 또는 *규약준수*설문지에의 *가맹기구*의 응답

7.2.2.7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프로그램에 중요한 *부적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 또는 신용할 만한 정보 입수

7.2.2.8 *가맹기구*의 *규약* 또는 *국제표준*에 의한 *중대한* 또는 *우선순위* 요건 위반

7.2.2.9 *WADA*가 조력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 활동하는 협조 프로그램에 따른 권고를 *가맹기구*가 시행하지 않았을 때

7.2.2.10 *가맹기구*가 *WADA*가 (예: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또는 다른 *경기대회*를 앞두고 *검사*와 관련하여) 제기하거나 보증한 권고에 따른 조치(예: 표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7.2.2.11 (*가맹기구*가 *국가도핑방지기구*거나 *국가도핑방지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인 경우) *가맹기구*의 국가가 *WADA*가 인정한 분석기관을 관리하며 그리고/또는 주요 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입찰 중이거나 개최권을 따낸 상태일 때

7.2.2.12 비준수한 것이 드러났던 *가맹기구*가 *재인가* 받고자 할 때, 그리고/또는

7.2.2.13 *WADA*의 집행위원회 그리고/또는 *WADA*의 이사회의 요구.

7.2.3 *규약* 20조는 국제*경기*연맹,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패럴림픽위원회가 그 회원/인준기구들의 *규약준수*를 모니터하고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WADA*가 모니터링 활동 중에 해당 *가맹기구*의 회원/인준기구의 명백한 *규약* 비준수를 알게 되는 경우, *WADA*는 *가맹기구*에게 *규약*에 따른 의무에 맞게 적합한 사후관리와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7.2.4 아울러, 다수의 *가맹기구*에 비하여 제한된 *WADA*의 자원을 고려하여, CRC는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표준*의 *중대한*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높은 *우선순위* 요건의 강제를 (필요한 경우, 비준수 선언과 *가맹기구 결과조치* 부과를 제시함으로써) *우선순위*화하겠다는 *WADA* 경영진의 제안을 승인할 수 있는 한편, *가맹기구*에게는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표준*의 다른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최*우선순위*는 *중대한* 요건 비준수와 악화요인을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합한 *가맹기구 결과조치* 부과를 추진하는데 부여될 것이다.

7.2.5 *WADA*는 또한 모니터링 업무를 도울 다른 기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2.6 다시 말해, *가맹기구*는 자신이 *WADA*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로 *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른 의무를 언제나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7.3 다른 기구와의 협력

7.3.1 *WADA*는 정부의 UNESCO 도핑방지협약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UNESCO와의 협력, 정부의 도핑방지협약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럽 회의와의 협력, 그리고/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기구*의 완전한 *규약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관련 기구들과 적합한 한에서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의 목적은 *가맹기구*의 *규약준수*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의 *WADA*의 노력을 촉진 및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모든 해당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3.2 그러한 협력에는 특정 국가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준수 모니터링 활동조정(예: 합동 현장 방문, 설문지 조정), 그러한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정보 교환, 그리고 연관된 관계기관의 준수를 조력 및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정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7.4 *WADA*의 모니터링 도구

7.4.1 *WADA*는 *가맹기구*의 *규약준수*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재량에 따른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4.1.1 각 *가맹기구*가 *규약* 24.1.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전달된 기간 내에 *규약준수*설문지 그리고/또는 다른 *규약준수*에 관한 보고를 완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이러한 보고는 *WADA*에 의해 요구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제공하며, 확인된 어떠한 *부적합*의 원인을 설명하며, 그러한 *부적합*을 시정하기 위해 *가맹기구*가 기울인 그리고/또는 기울일 것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술한다.

7.4.1.2 *규약준수*를 평가하고, *부적합*을 확인 및 범주화하며, 해당 *부적합*을 시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정조치를 확인하여 완전한 *규약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7.7항에 의거한 *가맹기구*의 계속적인 도핑방지프로그램 준수감사 시행

7.4.1.3 (a) 올림픽*경기* 및 패럴림픽*경기*에서의, 그리고 (b) 다른 선택된 *경기대회*에서의 독립감시프로그램 시행

7.4.1.4 올림픽*경기* 또는 패럴림픽*경기* 또는 다른 *경기대회*를 앞두고 *WADA*가 제기하거나 승인한 표적*검사* 그리고/또는 다른 조치 요구에 대한 *가맹기구*의 응답의 적정성 검토

7.4.1.5 다음 주요 문서의 검토

(a) *가맹기구*의 규정 및 법규(그리고/또는 관련 법령, 특정국에서 *규약*이 그러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b) *규약* 5.4항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4.1.3항에 따라 제공된 *가맹기구*의 위험도 평가 및 검사배분계획

(c) *규약* 14.4항에 따라 제시된 *가맹기구*의 *도핑관리*활동의 연간통계보고

(d) 도핑*검사* 양식, *TUE* 결정, *결과관리* 결정, 그리고 *ADAMS*에 보관된 다른 자료들(그러한 정보를 *ADAMS*에 특정 기한까지 입력하는 것에 대한 요건 준수 평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른 *TUE* 결정 검토 포함)

(e) *규약* 18조 및 *교육*에 관한 *국제표준* 4조 및 6조에 따라 작성된 *가맹기구*의 *교육계획* 및 평가보고서

(f) 다른 관련 기구에 의해 수집된 보고(예: 유럽회의 도핑방지협약 모니터링 집단에 수행한 국가 방문 보고), 그리고

(g) *WADA*가 *가맹기구*의 *규약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가맹기구*로부터 요구한 다른 어떠한 문서 또는 자료

7.4.1.6 7.8항에 따른 기타 프로그램 분야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

7.4.1.7 *규약* 7.6항과 14.1.4항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을 준수한 *가맹기구*의 *결과관리* 결정 및 *WADA*와의 소통 검토. 그리고 *가맹기구*에 의한 다음의 결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비정형분석결과를 비정상분석결과로 제시하지 않음
(b)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상수첩결과*를 도핑방지규정의 위반으로 제시하지 않음
(c) 소재지정보 불이행 또는 다른 명백한 위반을 도핑방지규정의 위반으로 제시하지 않음
(d) 도핑방지규정의 위반 혐의제기 철회
(e) 먼저 청문회를 열지 않고 도핑방지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절차의 결과에 동의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WADA*는 하나의 비준수 *결과관리* 결정만으로 *가맹기구*를 비준수한 것으로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WADA*는 결정을 입수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WADA* 경영진이 비준수로 간주하는 *결과관리*의 자료 수를 *가맹기구*에 통지할 것이며, 그러한 통지 후에 *WADA*는 *가맹기구*가 내린 다수의 *결과관리*결정이 계속적으로 비준수(8.2.2항에 따라 시정조치보고를 발행함으로써)에 머문다면, 그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1) *가맹기구*는 더 이상의 비준수 결과 관리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는 (2) *WADA*는 *가맹기구*가 담당하는 추가 비준수 결과 관리 결정을 받는다.

7.4.1.8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입수된 잠재적 *부적합*에 관한 정보 평가 및 처리. 이러한 출처에는 *WADA*의 정보조사부, *가맹기구*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 *WADA*가 인증한 분석기관 또는 *WADA*가 인가한 다른 분석기관, *시료*채취기구 또는 *시료*채취요원, 법집행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다른 규정 또는 징계 기관을 포함), *선수* 그리고 다른 당사자, 내부고발자, 언론, 그리고 일반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4.1.9 *규약* 10.7.1항에 따라 *가맹기구*의 비준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선수* 그리고 기타관계자를 독려할 수 있는 *WADA*의 권한 사용

7.4.1.10 *WADA*의 정보활동 및 조사국에 *가맹기구*의 비준수와 관련된 정보의 추가 제공을 요청 그리고/또는 *가맹기구*의 잠재적 비준수 사례를 조사하도록 요청

7.4.1.11 다른 어떠한 연관되고 신뢰할 만한, 입수 가능한 정보나 자료 사용

7.4.2 *가맹기구*가 (예: *규약준수*설문지 또는 의무적 정보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가맹기구*의 독점적, 기밀 정보인 준수정보를 *WADA*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WADA*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규약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사용하고, 이외의 경우 *규약, 국제표준* 및 해당 법률에 따른 *WADA*의 의무 또는 책임에 따라 취급할 것이다. 일반적인 보고/활동의 일환으로 *WADA*는 정보와 관련된 특정 *가맹기구*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기구*가 제공한 규정준수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며, 도핑 방지 목적으로 이러한 취합된 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7.4.3 모니터링 시 *WADA*는 (예를 들면) *가맹기구*의 이사회 구성원, 이사, 임원 및/또는 직원에 의한, 또는 *가맹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상당수의 *선수*지원요원, 또는 *가맹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여러 *선수*에 의한 도핑방지 규칙 위반과 같이, *가맹기구*에게 체계상 규정준수 문제가 있다는 잠재적 징후를 감안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위반 사항이 *가맹기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WADA* 또는 기타 제 3 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7.5 *규약준수* 설문지

7.5.1 *규약* 24.1.2항에 따라, *WADA*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가맹기구*는 자신의 *규약준수*에 관하여 *WADA*에 보고한다. *WADA*는 *가맹기구*에게 정기적으로 (단, 3년에 1회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준수*설문지를 보내어 자신의 *규약준수* 및 잠재적 *부적합*에 관한 자기 평가 및 자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규약준수*설문지는 *규약준수*설문지의 설문 응답에 대한 근거 및 보충으로 *가맹기구*가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5.2 *WADA*는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작성된 *규약준수*설문지를 첨부서류와 함께 반환할 날짜를 지정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날짜가 다가오면 *가맹기구*에 재차 공지할 것이다.

7.5.3 *규약* 24.1.3항과 관련하여, *가맹기구*가 정확하게 작성이 완료된 *규약준수*설문지를 지정된 날짜까지 *WADA*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규약* 24.1.2항의 위반에 해당하며 8.3.1항에 명시된 절차로 이어질 것이다.

7.5.4 *WADA*는 작성된 *규약준수*설문지에 제시된 정보를 검토하여 *가맹기구*가 어느 정도 *규약*준수를 하는 지를 평가할 것이다. *WADA*는 *규약준수*설문지의 특정 설문에 대한 *가맹기구*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입수한 정보, 예를 들어 *ADAMS*에 수집된 자료, 그리고 독립적 조사 보고를 참고할 것이다.

7.5.5 *WADA*가 *가맹기구*가 작성한 *규약준수*설문지를 통해 어떠한 *부적합* 사항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가맹기구*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는 *WADA*가 *규약준수*설문지 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신 다른 경로로 확인한 모든 *부적합* 사항에 대해 *가맹기구*에 규정준수 *국제표준*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WADA*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5.6 *WADA*가 *가맹기구*가 작성한 *규약준수*설문지를 통해 *부적합*을 확인하는 경우, *WADA*는 8.2.2항에 따라 시정조치보고를 할 것이다.

7.6 의무적 정보요구

7.6.1 다른 어떠한 모니터링 활동과는 별개로, *가맹기구*가 *중대한* 또는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비준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WADA*가 입수하는 경우, *WADA* 경영진은 해당

*가맹기구*에게 의무적 정보요구를 송부하여 *WADA*가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WADA*는 *가맹기구*가 실질적으로 *규약*준수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할 것이며, *WADA*가 이미 다른 출처(예를 들어, *ADAMS*)를 통해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해당 요청서에는 *WADA* 경영진이 왜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가맹기구*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21일보다 짧지 않아야 한다.)이 제시될 것이다. 해당 요구서는 *WADA* 경영진이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맹기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할 것이다. 이 기한은 일반적으로 21일 이후이지만 *WADA*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7.6.2 *WADA* 경영진은 *WADA* 감사관을 배정하여 *가맹기구*가 보내온 응답을 검토하고 평가와 권고를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적합한 경우) 8.2.2항에 따른 시정조치보고를 하도록 하는 권고가 포함된다.

7.6.3 만약 *가맹기구*가 *WADA*로부터 그러한 대답의 증거로 명시한 지정한 날짜 내에 의무적 정보요구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8.3.1항에 명시된 절차로 이어질 것이다.

7.7 준수감사 프로그램

7.7.1 *WADA* 경영진은 (CRC의 감독 하에) 어떤 *가맹기구*가 준수감사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7.2.2항에 나열된 요인들은 준수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가맹기구*는 다른 어떠한 관련 근거 또는 *WADA*가 수집 또는 수령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준수감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7.7.2 준수감사는 *WADA* 감사관에 의해 실시될 것이다. 준수감사는 대면으로(즉, 감사팀이 *가맹기구*를 방문하여 *가맹기구* 팀의 관련 담당자가 출석한 가운데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되거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의무적 정보요구와 같은 *WADA*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서면 정보의 교환으로 실시될 수 있다.

7.7.3 각각의 경우, *가맹기구*는 *WADA* 및 *WADA* 감사팀과 준수감사의 모든 측면에서 협조해야 한다. 협조 부족은 *WADA* 경영진에 의해 잠재적 *부적합*으로 CRC로 회부될 수 있다.

7.7.4 대면 준수감사 준비

7.7.4.1 *WADA*는 *가맹기구*에 준수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감사팀장 및 팀원의 이름, 감사팀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가맹기구*의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 (보통 2~3일간)를 알릴 것이다. 해당 날짜는 *가맹기구*로 하여금 감사팀의 방문 전 최소한 1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허락해야 한다. 해당 통지를 통해 *WADA*는 *가맹기구*가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팀이 요구하는 여러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할 것이다.

7.7.4.2 *가맹기구*는 통지에 대해 14일 이내에 해당 감사 날짜가 알맞다는 답변, 또는 해당 날짜가 알맞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WADA*가 제시한 날짜와 최대한 가까운 다른 날짜를 제시하는 답변을 보내야 한다.

7.7.4.3 *가맹기구*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위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데 협조하지 않거나, 통지에서 요청한 문서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규정 24.1.2조의 *부적합*으로 간주되며, *WADA*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8.3.1조에 명시된 프로세스를 개시하게 된다.

7.7.4.4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WADA*는 *가맹기구*에게 감사계획을 보내어 감사가 실시될 범위와 감사팀의 방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을 제공한다.

7.7.4.5 감사팀의 방문이 이루어지기 최소 14일 전에, 감사팀장은 직접(예: 전화로 또는 대면 회담으로) *가맹기구*의 주 접촉점에 연락을 취하여 준수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모든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하며, 감사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하고, *가맹기구*에 의해 감사팀에게 어떻게 정보가 준비되고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7.7.5 모든 경우, *가맹기구*는 *WADA* 감사팀의 방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감사팀이 방문하는 동안 함께할 적합한 직원의 배정, 그리고 *WADA* 감사팀이 준수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와 관련 시설의 제공이 포함된다. *가맹기구*가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가맹기구*는 그 *제3자*의 *대표자*로 하여금 *WADA* 감사팀의 질문에 답하고 감사 중 요청 받은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7.7.6 감사 개시 회의에서 감사팀은 준수감사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감사의 범위와 감사 협조 및 지원에 있어서 *가맹기구*에게 기대하는 바를 확실히 설명할 것이다. 감사팀은 *가맹기구*에게 감사와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7.7.7 준수감사 동안 감사팀은 여러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이다. 해당 정보에는 *가맹기구*가 작성 완료한 *규약준수*설문지, *ADAMS*에 보관된 자료, 독립된 조사 보고, *WADA*가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한 수집되거나 수령된 정보 및 언론보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입수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감사팀은 *가맹기구*가 자신의 도핑방지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수행한 업무의 대표적인 예시 및 증거를 찾아내며, 그러한 예시 및 증거와 *가맹기구*가 제시한 정보(예: *규약준수*설문지) 간의 불일치에 주목할 것이다. *가맹기구*는 준수감사를 완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 절차, 시스템에 감사팀이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7.7.8 감사 종료회의에서 감사팀은 구두로 *가맹기구*에게 사전 감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명백한 *부적합*(특히 *중대*하거나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하여)의 확인이 포함된다. 감사팀은 또한 일반 요건에 관한 결과 및/또는 모범 사례 권고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맹기구*에게는 종료회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감사팀의 사전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차이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감사팀은 또한 예상 후속조치 과정 및 시정조치 기간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가맹기구*가 감사결과의 문제를 곧바로, 즉, 시정조치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감사가 완료된 후 감사팀장은 시정조치보고 초안을 통해 *WADA* 경영진에 최종 감사 결과를 제출한다. 다시 말해, 감사팀의 추가적인 고려에 따라 최종 감사 결과는 종료 회의에서 구두로 제시된 사전감사 결과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최종시정조치보고가 8.2.2조에 따라 *가맹기구*에게 발행된다.

7.7.9 *WADA*는 우선 먼저 준수감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준수감사 비용에 관한 11.2.1.4항에 따라 *가맹기구*는 해당 금액을 잠재적 상환할 것이다.

7.7.10 *WADA*는 준수감사를 받은 *가맹기구*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다. 감사가 끝나고 *가맹기구*가 최종 시정조치보고를 받은 경우, *WADA*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한 요약을 게시할 수 있다.

7.7.11 *WADA*가 *가맹기구*의 규정준수감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가맹기구*에게 서면으로 정식 통보한다. 다시 말해, *WADA*는 규정준수감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신 다른 수단으로 확인된 모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규정준수감사에서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8 프로그램 분야 모니터링

7.8.1 *WADA* 경영진은 CRC와 협의하여 *가맹기구*가 *규약준수*설문지와 준수감사를 보완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프로그램 분야 준수 모니터링해야 하는 여러 요건을 지정한다.

7.8.2 *WADA* 내 관련 부서는 각 *가맹기구*가 문제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프로그램 분야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적절한 일정과 알림 기능을 마련하여 *가맹기구*에게 전달하고 *부적합*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7.8.3 *가맹기구*가 관련 *WADA* 부서에서 정한 시한까지 *부적합*을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부적합*을 *WADA* 경영진에 보고한다. *WADA* 경영진은 8.2.2항에 따라 시정조치보고를 발행한다.

7.8.4 준수감사를 받은 *가맹기구*는 위의 프로그램 분야 모니터링 외에 감사에서 드러난 위반(*'중대한'* 또는 *'우선순위'*에 속하는 것)에 대해 감사 후 시정조치보고 작성 후에 검토를 받게 할 수 있다. 관련 *WADA* 부서는 의무적 정보요구를 포함해 *WADA*에서 확보한 정보를 참고하여 *중대한* 또는 *우선순위*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관련 *WADA* 부서가 *중대한* 또는 최*우선순위* 요건의 위반을 발견하면 *WADA*에서는8.2.2항에 따라 시정조치보고를 발행한다.

7.9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적용되는 특별 조항

7.9.1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기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여타 *가맹기구*와 마찬가지로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약준수* 모니터링과 집행 규정/절차를 적용 받는다. 단 이들 단체도 *독립 관찰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비준수의 확인과 시정을 위한 일반 절차는 *경기대회* 일정상 본 제7.9항 명시된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본 7.9항에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본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 명시된 일반 규정과 절차, 일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기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적용된다.

7.9.2 *WADA*는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맞춘 *규약준수* 설문지를 *경기대회*가 열리기 1년 또는 그 이전까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게 보낼 수 있다.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WADA*가 정한 합당한 기간 내에 *규약준수* 설문지를 작성하여 *WADA*에 제출하여 *WADA*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행사가 발생하기 전에 *부적합*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요 경기대회* 주최측이 작성한 *규약준수* 설문지는 모든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주요 대회 주최측이 대회에 대해 제안하는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7.9.3 *WADA*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서 작성한 *규약준수* 설문지를 근거로 *부적합* 사항을 찾아낼 경우 8.2.2항에 따라 시정조치보고를 발행하게 되며, 시정조치보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9.3.1 시정보치 보고서에 '*중대한 부적합* 요구사항이 확인된다면 *가맹기구*는 2개월이 넘지 않는 *WADA*가 정한 기간 내에 그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7.9.3.2 시정조치보고에 '*우선순위 부적합* 요구사항이 확인된다면 *가맹기구*는 4개월이 넘지 않는 *WADA*가 정한 기간 내에 그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7.9.3.3 시정조치보고에 *일반 부적합* 요구사항이 확인된다면 *가맹기구*는 6개월이 넘지 않는 *WADA*가 정한 기간 내에 그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7.9.4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WADA*에서 정한 시한 내에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WADA*는 8.1항에서 8.3항에 명시된 표준 시정 절차와 시한에 따른다. 단 *경기대회* 일정이 급박하여 표준 시정 절차와 시한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허락한다면 *WADA* 경영진은 시한 단축을 허용하거나(단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단축 일정과 미충족 시 *결과조치*를 통보한 때에 한함) 8.1항에서 8.3항에 명시된 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CRC에 긴급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9.4.1 이 경우 *WADA* 경영진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드러난 *부적합* 사항을 소명할 기회를 주고 *가맹기구*가 제출한 소명을 CRC에 전달한다.

7.9.5 *WADA* 경영진이 7.9항에 따라 CRC에 사안을 회부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7.9.5.1 CRC는 조속히 (대면 등의 방법으로) 소집하여 사안을 검토한다. *WADA* 경영진의 평가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에서 제출한 소명이나 의견을 7.9.4.1항에 따라 검토한다.

7.9.5.2 검토 후 CRC에서 신속 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를 권고할 수 있다.

(a) 독립 관찰 프로그램이라는 제도의 임무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면)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경기대회*에서 시행한다: 그리고/또는

(b) *가맹기구*에게 시정조치보고를 발행하고 신속 절차에 따라 이행하게 하여 해당 *경기대회* 다음 회차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게 한다.

(c)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타 *가맹기구* 및/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여 *경기대회*에서 *도핑방지활동*을 지원하게 한다.

7.9.6 만일 CRC가 신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8.5.4.3항 및 8.5.4.4항을 적용한다.

7.9.7 7.9.6.2(a)항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이 성립한다

7.9.7.1 *WADA*는 7.4.1.3항에 따라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규약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a) 올림픽 및 패럴림픽 (b) 대륙별 대회(예: 아프리칸 게임, 아시안 게임, 유럽 게임, 팬아메리칸 게임), 영연방 *경기대회*, 세계 대회 (c) 그 외 CRC와 합의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될 *경기대회*에서 독립 관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7.9.7.2 *WADA*에서 7.9.3항에 따라 시정조치보고를 발행할 경우, 해당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다음 *경기대회*에 보낸 독립 관찰 프로그램의 임무 중 하나는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해당 시정조치보고에 명시된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경기대회* 후 독립 관찰 프로그램에서 작성하고 *WADA*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 이를 명시한다. 이때 *경기대회* 중에 독립 관찰 프로그램에서 찾아낸 그 외 *부적합* 사항이 있다면 함께 수록한다.

[7.9.8.2항에 대한 주해: 규약준수 설문지 그리고/또는 시정조치보고에서 주요 경기대회 조직이 제공한 정보와 이에 대한 WADA의 응답은 가능한 경우, 규약준수 설문지 또는 시정조치보고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미 처리된 요소(예: 정책, 문서, 프로토콜 등)에 대한 검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 관찰자 프로그램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7.9.7.3 독립 관찰 프로그램에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위반사항은 모두 새 시정조치보고에도 수록되며 이에 대해서는 (*WADA*의 판단에 따라) (a) 정해진 시한(7.9.3항에 명시된 시간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안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거나 (b)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다음 *경기대회* 전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8.0 *가맹기구*에 대한 *부적합* 시정기회 제공

8.1 목적

8.1.1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 *가맹기구*를 돕고 *부적합*을 시정하도록 지원하여 완전한 *규약준수*를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8.1.2 *가맹기구 규약준수*를 위한 *국제표준* 8조에서는 *가맹기구*가 확인된 *부적합*을 해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주기 위해 *WADA*가 따를 절차를 설정한다. 이 과정의 다양한 단계들은 도표 1에서 절차도로 제시된다(아래 5조).

8.2 시정조치보고 및 시정조치계획

8.2.1 *가맹기구*의 규칙이나 규정(또는 특정 국가에서 *규약*이 법률로 구현된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이 *규약*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에 *규약* 비준수를 확인하는 시정조치보고를 발행하고 최대 3개월의 기간을 지정하여 *가맹기구*가 (i) *WADA*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시정하는 수정안을 채택하거나 (ii) (a) *WADA*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준수를 시정하는 적절한 수정안 초안 및 (b) *WADA*가 수용할 수 있는 확인된 기간 내에 해당 수정안을 발효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한다.

8.2.2 *WADA*가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프로그램의 다른 어떠한 측면에서 *부적합*을 확인하는 경우(*규약준수*설문지 또는 준수감사의 결과로써든, 또는 의무적 정보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써 제공된 정보의 결과로써든, 또는 다른 것으로써든) *WADA*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보고를 *가맹기구*에게 보낸다.

8.2.2.1 요구사항과 함께 *중대한 부적합*을 확인. *가맹기구*는 3개월 이내 *WADA*가 지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또는

8.2.2.2 요구사항과 함께 우선적 *부적합*을 확인. *가맹기구*는 6개월 이내 *WADA*가 지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또는

8.2.2.3 요구사항과 함께 일반적인 *부적합*을 확인. *가맹기구*는 9개월 이내 *WADA*가 지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가맹기구*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인 경우는 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해당 사안은 7.9항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8.2.3 시정조치보고를 보낸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가 시정조치보고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요구된 시정조치를 지정된 날짜 내에 시행하기 위해서 할 일을 *가맹기구*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8.2.4 *가맹기구*가 시정조치보고에서 확인된 하나 이상의 *부적합*, 그리고/또는 *중대한* 또는 *우선순위* 분류에 논쟁을 제기하는 경우, *WADA* 경영진은 해당 상태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 후에도 해당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맹기구*는 8.4.1항에 따라 CRC에 논쟁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 제기 이후에는 *규약준수* 절차가 유지되며 *WADA* 경영진은 CRC 또는 *WADA* 집행위원회(해당되는 경우)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CRC가 *WADA* 경영진의 견해에 동의하는 경우, 문제는 비준수 주장에 대한 *가맹기구*의 *규약준수*에 대한 본 국제 표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CRC가 *WADA* 관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WADA* 관리는 문제를 *WADA* 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가맹기구*는 후속 절차에서 *부적합* 그리고/또는 *부적합* 분류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2.5 8.1.2항의 대상이 되는 *가맹기구*는 시정조치보고에 지정된 날짜 내에 *부적합*을 시정해야 한다. 시정조치보고에는 *가맹기구*가 자신의 기관 내에서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각각의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을 돕기 위한, *가맹기구*가 완수해야 할 시정조치계획란이 포함될 것이다. *가맹기구*가 *WADA*에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권고된다. 만약 *가맹기구*가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한다면, *WADA*는 해당 계획을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만약 계획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WADA*는 *가맹기구*가 계획을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것을 돕도록 의견을 제공할 것이다.

8.2.6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가 시정조치보고에서 확인된 *부적합*을 시정하는 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다.

8.2.7 시정조치보고가 *가맹기구*에게 발송되고 해당 건이 CRC에게 회부되기 전에 *부적합*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해당 건이 CRC에게 회부되기 전에 시정했어야 할 *부적합* 사항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WADA* 경영진은 새 시정조치보고를 *가맹기구*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단 이 보고서에는 새로 드러난 *부적합* 사항을 수록하고 새 시정조치보고에 명시된 모든 *부적합* 사항의 시정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8.3 CRC 회부 전 시정할 최종 기회

8.3.1 *가맹기구*가 시정조치보고에 설정된 기간 내에 모든 *부적합*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가맹기구*가 *규약준수* 질문서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응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준수감사 통지, 프로그램 분야 모니터링의 일부로 이루어진 요청 또는 의무적 정보요구의 경우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에게 해당 불이행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최대 3개월 이내의 새로운 기간을 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가맹기구*가 해당 기간 내에 입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가맹기구*가 확인하지 않는 한 새 기간은 다시 연장되지 않는다.

8.3.2 *가맹기구*에게 8.3.1조에 따라 원래의 *부적합*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간이 부여된 후 해당 문제가 CRC에 회부되기 전에 추가 (신규 또는 반복) *부적합*이 발견되는 경우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에게 추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통지를 보내고 모든 *부적합* 사항(즉, 원래 및 추가 *부적합*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기간(해당되는 경우 신속처리절차일 수 있음)을 정하고, 그 후에는 모든 *부적합* 사항이 하나의 통합 절차를 통해 함께 처리하게 된다.

8.4 CRC로 회부

8.4.1 *가맹기구*가 (a) *WADA* 경영진과의 의견 교환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부적합*에 논쟁이 있고 CRC로 사안을 회부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b) 8.3.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까지 *부적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8.3.1항에 따라 설정된 기간까지 의무적 정보요구나 *규약준수*설문지에 대한 필수적인 응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WADA* 경영진은 해당 사안을 CRC에 회부하여 8.4.2항부터 8.4.6항에 따라 심리하도록 할 것이다. 회부 후 *규약준수* 절차는 유지되며, *WADA* 경영진은 CRC 또는 *WADA* 집행위원회(해당되는 경우)에서 8.4.2항~8.4.6항에 대한 추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8.4.2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에게 해당 사안을 CRC에 회부하도록 결정하고, CRC가 심리하기를 원하는 설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조언할 것이다.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로부터 받은 설명이나 의견을 CRC에 전달할 것이다.

8.4.3 모든 경우, CRC는 *WADA* 경영진의 *부적합* 분류를 중대, *우선순위* 또는 일반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시정 조치를 위한 기간은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WADA* 경영진이 그 입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WADA*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CRC는 또한 해당 *부적합*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기구*로부터 받은 모든 설명이나 의견을 완전하고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맹기구*의 *부적합*을 설명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건 또는 시정조치보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은 8.6조에 따라 완전하고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8.4.4 CRC는 *가맹기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적합*을 시정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 내에 의무적 정보요구 또는 *규약준수*설문지에 만족스럽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CRC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WADA* 집행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서와 이유를 명시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며 CRC는 *가맹기구*에서 *규약* 및/또는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공식 통지서를 보낼 것을 권고한다. 보고서는 또한 문제의 요건을 *중대, 우선순위* 또는 일반으로 분류하고, 악화 요인을 파악하고, 특정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10조에 따라 그러한 비준수에 대한 공식 통지에서 제안되도록 권장하고, 11조에 따라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공식 통지에서 제안되는 조건을 권장해야 한다.

8.4.5 대안적으로, 만약 *가맹기구*가 4개월 이내에 *부적합*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CRC가 만족할 만큼 설명하는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면, CRC는 *WADA* 집행위원회가 (a) *가맹기구*에게 (집행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는) *부적합*을 시정할 기간을 제공하고, (b) 날짜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WADA* 집행위원회의 추가적인 결정없이) 만약 CRC가 그 기간까지 *부적합*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우, 8.4.4항에서 명시된 공식적인 통지를 보내도록 한다. 이 선택사항을 관심 목록 절차라고 한다.

8.4.6 CRC는 어느 경우든 10조에 명시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CRC는 제안된 결과에 대한 권고를 할 때 *선수*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안된 *가맹기구 결과조치*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고려한다. *WADA* 경영진은 CRC에 이러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8.5 신속처리 절차

8.5.1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가맹기구*가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 표준의 하나 이상의 주요 요구 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본 8.5항은

8.5.1.1 *WADA*가 스포츠 그리고/또는 특정 대회의 완전성 그리고/또는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된다.

8.5.1.2 다음 경우 적용될 수 있다 (*WADA*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 *WADA*가 *부적합*이 *가맹기구*의 과거 *부적합* 중 하나 이상과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경우(과거 *부적합*이 수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b) 7.9조에서 설명된 대로 문제의 *경기대회*의 시기로 말미암아 긴급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c) 8.3.2조에 설명된 원래의 *부적합*과 추가 *부적합*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8.5.2 *WADA* 경영진은 8.5.1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CRC에 회부하여 본 *가맹기구*의 *규약준수 국제표준*의 상기 조항에 제시된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긴급 심리되도록 해야하거나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WADA* 경영진은 그러한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되 해당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단축된 기간을 둘 것이며, *가맹기구*가 단축된 기간 내에 *부적합*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례를 CRC에 회부할 것이다.

8.5.3 그러한 경우,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명백한 *부적합*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가맹기구*가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한 설명을 CRC에 전달해야 한다.

8.5.4 *WADA* 경영진이 본 8.5항에 따라 사례를 CRC에 회부하면,

8.5.4.1 CRC는 해당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소집할 것이다. CRC는 *WADA* 경영진의 평가, 그리고 8.5.3항에 따라 *가맹기구*가 제출한 모든 설명이나 논평을 심리할 것이다

8.5.4.2 그러한 검토 후에 CRC가 신속처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아래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a) *가맹기구*가 준수감사를 받을 것; 그리고/또는

(b) 시정조치보고가 *가맹기구*에게 발부될 것, 9.3항 그리고/또는 8.3항 그리고/또는 8.4항에 명시된 정상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내릴 것.

8.5.4.3 그러나 만약 CRC가 신속처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CRC는 *WADA* 집행위원회가 *가맹기구*에게 *WADA*가 제기한 가중요인을 확인하여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표준*의 *중대한* 요건을 비준수했음을 (경우에 따라

"했었음을") 선언하고 (10조에 따라) 그러한 비준수 시에 제시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 (CRC가 깨끗한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또는 스포츠 그리고/또는 특정 *경기대회*의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히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포함하여)를 명시하며, (11조에 따라) *재인가*를 위해 *가맹기구*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명시하는 공식 통지서를 보내도록 권고할 수 있다.

8.5.4.4 *WADA* 집행위원회가 해당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대면 회의에서의 투표를 통해, 또는 지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텔레컨퍼런스 또는 이메일 회람을 통해) 해당 공식 통지는 9.2.3항에 따라 *가맹기구*에게 보내지며 그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WADA*는 해당 사례를 *CAS* 일반중재과에 회부할 수 있으며 9.4.4항에 따라 *CAS*에 임시 구제 및/또는 본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8.6 불가항력적 사건

*가맹기구*가 하나 이상의 *부적합* 사항 또는 시정조치보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WADA* 집행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CRC가 제시한 권장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 사건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동안 *가맹기구*에 대한 비준수 절차를 연기 그리고/또는 중단하고, 그러한 영향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CRC가 제시한 권장 사항을 고려하여) 비준수 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또는 (2) 관련 *부적합*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고 *부적합* 절차를 종료한다. 절차를 연기 및/또는 중단하거나 비준수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한 *WADA*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0 비준수 확인 및 *가맹기구 결과조치* 부과

9.1 CRC 권고

9.1.1 8.4항과 8.5항은 CRC가 *가맹기구*에게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표준*의 요건을 비준수했음을 선언하고, 해당 요건을 *중대한*, *우선순위*의, 또는 일반적인으로 분류하며, (*중대한* 요건의 비준수를 포함하는 사례일 경우) *WADA*가 주장하는 가중요인을 확인하고, (10조에 따라) 그러한 비준수 시에 제시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명시하며, (11조에 따라) *재인가*를 위해 *가맹기구*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공식 통지를 보내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경우들을 확인한다.

9.2 *WADA* 집행위원회의 심리

9.2.1 다음 대면회의에서 또는 (만약 CRC가 그러한 권고를 한다면) 텔레컨퍼런스 또는 이메일 회람을 통해, *WADA* 집행위원회는 CRC의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CRC의 권고와 해당 권고에 관한 *WADA*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WADA*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지 14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예: 해당 사안에 대한 *WADA* 집행위원회의 심의 회의록 발행을 통해).

9.2.2 *WADA* 집행위원회가 CRC 권고의 모든 부분을 또는 일부분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WADA*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갈음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안을 다시 CRC에 이송하여 CRC가 CRC가 해당 사안을 추가 심의하고 (예: *WADA* 집행위원회에 수정 권고를 함으로써)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WADA* 집행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관한 CRC의 2차 권고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WADA*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다시 CRC에 이송하거나, 적합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다.

9.2.3 *WADA* 집행위원회가 (즉시, 또는 8.4.5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이 만료되는 시점에 CRC가 여전히 *부적합*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자동적으로) *가맹기구*에게 비준수 공식 통지를 보내라는 CRC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WADA*는 9.1.1항에 제시된 사안들을 포함한 공식 통지를 *가맹기구*에게 보내야 한다. 이후의 절차는 도표2의 절차도에 제시되어 있다 (위 5조 참조).

9.2.4 해당 공식 통지에 명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과 관련된 영향력을 지닐 경우, 예를 들어,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출전 또는 참가에 영향을 끼칠 경우, *WADA*는 해당 통지의 사본을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리고/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9.2.5 *가맹기구*에 송부된 공식 통지(또는 그것의 개요)는 *WADA*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되며, *가맹기구*가 해당 통지를 수령한 후에는 *WADA*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WADA*의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해당 통지를 게재하는 등, 해당 통지를 공개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9.3 *가맹기구*의 수용

9.3.1 *가맹기구*는 공식 통지를 수령한지 21일 내에 *WADA*의 비준수 선언 그리고/또는

*WADA*가 통지에서 제시한 *가맹기구 결과조치* 그리고/또는 *재인가* 조건에 논쟁 신청을 할 수 있다. *규약* 24.1.5항과 관련하여, 만약 *가맹기구*가 21일 이내에(또는 *WADA*가 동의한 한에서 연장된 날짜 내에) 서면으로 그러한 논쟁을 *WADA*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WADA*의 선언은 자인된 것으로, *WADA*가 제시한 *가맹기구 결과조치* 그리고/또는 *재인가* 조건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통지는 자동적으로 *규약* 24.1.9항에 따라 즉시 효력을 지니는 (9.3.2항에 의거) 강제력 있는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이 결과는 *WADA*에 의해 공개적으로 보고될 것이다.

9.3.1.1 대안적으로, 만약 *가맹기구*가 공식 통보 수령 후 21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완벽하게 시정하기로 할 경우 *WADA* 경영진은 해당 건을 CRC로 이관한다. CRC가 판단하기에 *부적합* 사항이 완벽하게 시정되었다면 CRC는 *WADA* 집행위원회에 해당 건을 *CAS*에 회부하지 않고 공식 통지를 철회할 것을 건의한다 (적절한 경우 예를 들어 *가맹기구*가 비준수와 관련하여 *WADA*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특정 조건이 적용된다). CRC가 판단하기에 *부적합* 사항이 완벽하게 시정되지 않았다면 *WADA*는 해당 *가맹기구*에 공식 통지(CR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를 다시 발송하여 통지 수령일로부터 추가로 21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을 수용하게 한다.

9.3.1.2 또는 정식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가맹기구*가 4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CRC가 만족할 만큼 설명하는 시정조치계획을 제공하는 경우 *WADA*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CRC는 *WADA* 집행위원회가 관심 목록 절차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적절한 경우, 예를 들어 비준수와 관련하여 *WADA*에 발생한 비용을 *가맹기구*가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특정 조건에 따라).

9.3.1.3 *가맹기구*가 프로세스의 후반 단계에서 비준수 사항을 완전히 시정하는 경우, *WADA* 집행위원회는 (CRC의 권고를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즉시 중단할지, 아니면 a) 비준수와 관련하여 *가맹기구*가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수락했거나 그에게 부과된 시점 그리고/또는 (b) *가맹기구*가 비준수와 관련하여 *WADA*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한 시점까지 프로세스를 계속할지 결정한다.

9.3.2 *WADA*는 9.3.1항의 첫 문단에서 언급한 최종결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보고할 것이다. *가맹기구*가 *WADA* 통지의 일부 측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발생했을 *CAS* 절차에 *규약* 24.1.7항에 따라 개입할 권리가 있는 모든 당사자는 *WADA*가 해당 결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후 21일 이내에 *CAS*에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그러나 결정의 다른 부분에 반하는 것은 아닌)

해당 조항에 따라 부과된 *가맹기구 결과조치*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해당 당사자는 항소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근거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당사자에 대한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는 임시 조치를 *CAS*에 요청할 수 있다. *CAS*가 해당 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결정은 다른 모든 *가맹기구*에 대해 최종적이고 즉시 집행 가능하지만 *CAS*가 해당 당사자의 항소를 거부하지 않는 한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항소는 스포츠 관련 중재 및 조정 규정에 관한 *CAS 규약*, 그리고 본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 따라(둘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에 따라 *CAS* 항소중재과에서 해결한다. 스위스법이 절차에 적용될 것이다. 중재장소와 청문회장은 스위스 로잔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절차는 영어로 실시될 것이며 논쟁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CAS* 중재단은 세 명의 중재인으로 이루어진다. *WADA*와 *가맹기구*가 각각 한 명씩 *CAS* 중재단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는데, *규약* 24.1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의 경우 *CAS*가 특별 지정하는 중재인 목록에서, 또는 일반 *CAS* 중재인 목록에서 한 명씩 고르고, 그렇게 선택된 두 중재인이 함께 상기 목록에서 *CAS* 중재단의 단장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골라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3일 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CAS*의 항소중재과장이 상기 목록에서 *CAS* 중재단장을 선발한다. 사례는 신속하게 완료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CAS* 중재단장 지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해당 결정은 *CAS*와 당사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보고된다.

9.4 *CAS*의 결정

9.4.1 만약 *가맹기구*가 선언된 비준수 그리고/또는 제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 그리고/또는 제시된 *재인가* 조건에 대해 논쟁 신청하기를 희망한다면, (*규약* 24.1.6항에 따라) *가맹기구*는 *WADA*로부터 통지를 수령한 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WADA*에 통지해야 한다. 그 후 *WADA*는 *CAS*에 공식 논쟁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논쟁은 *CAS*의 스포츠 관련 중재 및 조정 규정에 관한 *규약*, 그리고 본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에 따라(둘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CAS*의 일반중재과에서 조정될 것이다. 스위스법이 절차에 적용될 것이다. 중재장소와 청문회장은 스위스 로잔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절차는 영어로 실시될 것이며 논쟁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CAS*의 중재단은 세 명의 중재인으로 이루어진다. *WADA*와 *가맹기구*가 각각 한 명씩 *CAS* 심사단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는데, *규약*24.1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의 경우 *CAS*가 특별 지정하는 중재인 목록에서, 또는 일반 *CAS* 중재인 목록에서 한 명씩 고르고, 그렇게 선택된 두 중재인이 함께 상기 목록에서 *CAS* 중재단의 단장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골라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3일 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CAS*의 항소중재과장이 상기 목록에서 *CAS* 중재단장을 선발한다. *규약* 24.1.7항에

명시된 대로 (적용될 경우) 제3자가 개입하거나 개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제안된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그러하다. 사례는 신속하게 완료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CAS* 중재단장 지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해당 결정은 *CAS*와 당사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보고된다.

9.4.2 만약 *가맹기구*가 *규약* 그리고/또는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WADA*의 선언에 *가맹기구*가 논쟁을 신청한다면, *WADA*는 개연성 비교원칙에 따라 *가맹기구*가 선언에서와 같이 비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닌다. *CAS* 중재단이 *WADA*가 입증을 하였고 *가맹기구*가 *WADA*에 의해 제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 그리고/또는 *재인가* 조건에 논쟁을 신청하는 경우, *CAS* 중재단은 10조의 조항들을 참조하여 어떠한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그리고/또는 11조의 조항들을 참조하여 *재인가*를 위해 *가맹기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를 또한 심의할 것이다.

9.4.3 만약 최후의 수단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일반, 신속절차 불문)든 *가맹기구*가 정해진 *부적합* 사항의 시정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사건이 CRC로 이관되고, *가맹기구*가 *CAS*에서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CRC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할 경우, *WADA*는 (a) *WADA*가 *CAS*에서 사건을 조사 그리고/또는 추적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가맹기구*가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수 있고/또는 (b) 필요한 기간 내에 *부적합*을 시정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반영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9.4.4 *가맹기구*가 반박하는 그 어떠한 *가맹기구 결과조치*도 *CAS*의 명령이 없는 한, 그리고 명령이 있기까지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WADA*가 *CAS*에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에 *규약* 24.1.7항에 따라 개입할 권리를 갖는 제3자는 그러한 조치로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들을 권리가 있다. 잠정적 임시조치가 허가된 경우 *가맹기구*와 해당 제3자는 그러한 임시조치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으나, 대신 해당 사례의 시비에 관한 즉결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만약 잠정적 임시조치가 불허된다면, *CAS*가 해당 사례의 시비에 관한 즉결 청문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9.4.4.1 *WADA*는 필요하면 (예컨대 증거 인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당 건이 *WADA* 집행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해당 *가맹기구*에게 공식 분쟁 통보를 하기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잠정적인 임시 조치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잠정적인 임시 조치가 허가되는 경우 *가맹기구* (및 그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제3자 개입자)는 *CAS* 항소중재과에 그 잠정적인 임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5 다른 *가맹기구*의 인정 및 집행

9.5.1 *가맹기구*의 비준수에 관한 결정이 (*가맹기구*가 9.2.3항에 따라 송부된 *WADA*의 공식 통지의 내용에 논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가맹기구*가 논쟁 신청을 하였으나 *CAS*가 *가맹기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규약* 24.1.9항에 따라 해당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모든 *가맹기구*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행해야 한다.

9.5.2 *가맹기구*는 자신의 법규, 규정 그리고 규칙 항에 이 요건을 시한에 따라 준수할 마땅한 권한이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9.6 *재인가*에 대한 분쟁

9.6.1 *가맹기구*가 부과된 *재인가*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아 아직 *재인가*의 자격이 없다는 *WADA*의 주장에 해당 *가맹기구*가 논쟁 신청하기를 희망한다면, *가맹기구*는 해당 주장을 *WADA*로부터 수령한지 21일 이내에 *WADA*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규약* 24.1.10항 참조). *WADA*는 이후 공식 논쟁 통지를 *CAS*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논쟁는 *규약* 24.1.6항에서 24.1.8항 그리고 본 표준 9조에 따라 *CAS* 일반중재과에서 조정할 것이다.

9.6.2 *가맹기구*가 아직 부과된 *재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재인가* 자격이 없다고 입증할 책임은 개연성 비교원칙에 따라 *WADA*에게 있다. 그 사안이 이전에 *규약* 24.1.6항에 따라 *CAS* 중재단에 의해 검토되었다면, 가능하다면, 같은 중재위원이 청문을 구성하고 새로운 분쟁을 결정해야 한다.

10.0 *가맹기구 결과조치* 결정

10.1 잠재적 *가맹기구 결과조치*

10.1.1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부적합*에 대해 발생가능한 *결과조치*는 당면한 사건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대해 해당 사례의 특정한 사실과 정황에 10.2항에 명시된 원칙들을

적용하여 개별적 또는 누적하여 부과될 수 있고 그 내용은 *규약* 24.1.12항에 명시되어 있다.

10.1.2 부록 B에 명시된 대로 특정 *가맹기구* 결과는 특정 유형의 *가맹기구*에 따라 다르다.

10.1.2.1 비준수 *가맹기구*가 국제 연맹과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경우(해당 요구 사항이 국제 연맹,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둘 다로서 부과되었는지 여부): (1) 문제의 비준수에 대해 두 유형의 조직 모두에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적용된다. (2) 부과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국제 연맹으로서의 자격과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로서의 자격 모두에 적용된다.

[10.1.2.1조에 대한 주해: 예를 들어, 가맹기구가 높은 우선순위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국제 연맹으로서 누리는 WADA 특권과 국제 연맹으로서 누리는 WADA 특권을 모두 잃게 된다.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B.2.1(a) 항), 승인된 제3자가 국제 연맹 및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도핑방지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독하거나 역할을 인수할 수 있다(B.2.1(b) 항). 또한, 가맹기구의 대표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기구 또는 그 회원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B.2.1(d) 항), 그 결과는 가맹기구의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연맹으로서의 가맹기구이자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로서의 가맹기구의 대표자에게도 적용된다].

10.1.2.2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가맹기구*가 '스포츠 관련 중요성을 지닌 기타 조직'(*규약* 23.1.1항)인 경우, 국제 연맹에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10.2 특정 사례에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 결정과 관련된 원칙

10.2.1 특정 사례에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해당 사례의 비준수의 특성과 심각성에 비례해야하며, *가맹기구*의 잘못의 정도와 해당 비준수가 깨끗한 스포츠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다. 깨끗한 스포츠에 *가맹기구*의 비준수가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지침으로서 *규약* 및 *국제표준*의 요건들은 이후 부록 A에서 설명하듯이 (뒤로 갈수록 중요도 하락) *중대한*, *우선순위*의, 일반적인으로 분류된다. 해당 사례에 하나 이상의 분류의 비준수가 포함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그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분류를 바탕으로 한다. *가맹기구*의 잘못의 정도와 관련하여, 준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의무 또는 기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화요인이 아니지만 *가맹기구* 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는 부과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2.2 특정 사례에서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는 가중요인이 없는 사례보다 더 큰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도출되어야 한다. 반면에 사례에 추정되는 상황이 포함되는 경우 더 작은 *가맹기구 결과조치*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다.

10.2.3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서로 다른 분류의 *가맹기구* 간의 부당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연맹과 *국가도핑방지기구*는 스포츠에서의 도핑을 퇴치하는데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규약* 및 *국제표준*에 의거한 그들 각자의 의무의 비준수에 대한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들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10.2.4 10.2.1항에서 언급한 비례원칙에 따라 특정 사례에서 부과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필요한 경우 *규약* 및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해당 *가맹기구*가 완전한 *규약준수*를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가맹기구*의 비준수를 처벌하며, 해당 *가맹기구* 그리고/또는 다른 *가맹기구*가 추가적인 비준수를 예방하고, 모든 *가맹기구*가 항상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규약준수*를 확실하게 달성 및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10.2.5 무엇보다도 부과된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선수*, 기타 이해관계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WADA* 및 정부기관 및 스포츠 관련 *WADA* 협력기관이 도핑으로부터 스포츠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신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이다.

[10.2.4항 및 10.2.5항에 대한 주해: CAS가 ROC et al v IAAF, CAS 2016/O/4684와 RPC v IPC, CAS 2016/A/4745에서 판결하였듯이, 만약 가맹기구가 규약을 준수하는 도핑방지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한 경기의 장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가맹기구의 영향 범위 내에서 행동 변화를 유발할 의미 있는 결과조치를 가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 경기대회의 무결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가맹기구 소속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그리고/또는 대리인이 국제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그러므로 합법적이고 과잉금지원칙으로)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0.2.6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규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부과된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선수* 그리고/또는 *선수*지원요원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일 경우, 문제의 *가맹기구*의 *선수* 그리고/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자신들은 해당 *가맹기구*의 비준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다른 관련 *가맹기구*가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등)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들을 *경기대회*에서 중립인 자격으로(즉, 어떠한 국가의 대표가 아닌 채로) 참가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이미 부과된 해당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효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그들의 경쟁자에게 불공평하지 않고, (*선수*가 충분한 기간 동안 적합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경기대회*의 무결성에 대한 또는 *WADA*와 그 이해당사자들이 도핑으로부터 스포츠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헌신을 하고 있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절차가 (서로 다른 사례에서 처리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WADA*의 관리 하에 그리고/또는 승인 하에 허가될 수 있다.

[10.2.6항에 대한 주해: 한가지 예로서 IAAF의 대회규정 22.1A이 있다. (ROC et al v IAAF, CAS 2016/O/4684에서 논의된 대로) 해당 규정에서는 자격정지된 회원국연맹의 소속 선수가 '중립' 선수로서 국제경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특별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조건은 해당 선수가 다른 완전히 적합한 도핑방지시스템에 상당히 객관적인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자격정지된 해당 회원국연맹이 도핑방지규정을 강제하지 못한 것이 선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특히, 선수는 자신의 경쟁자들이 해당 국제경기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받아야 했던 검사와 질적으로 동일한 완전한 준수 검사를 경기기간 내외로 받아왔음을 입증해야 했다.]

10.2.7 적용된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스포츠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가맹기구*의 비준수하고 있는 *도핑방지활동*의 중단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는 *가맹기구*가 *재인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동안 깨끗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에 결함이 없음을 보장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특정 사례의 정황에 따라, 이는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독 또는 책임이전 부과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가맹기구*는 *재인가*를 할 때까지 깨끗한 스포츠를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특정 *도핑방지활동*(예: *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허가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특별모니터링이 시행 허가될 수 있다.

10.2.8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가맹기구*가 *재인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 복원 후에 적용되는(또는 계속 적용되는)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부과를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10.2.8조에 대한 주해: 일반적인 규칙은 가맹기구가 재인가되는 시점에 모든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a) 부록 A, B가 달리 명시하는 경우, (b) 특정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예: 처벌 그리고/또는 억제 효과가 적절함을 보장하기 위해)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인가 후 (특정)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2.9 처음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은 (*WADA*제안이며 *가맹기구*가 수용했던지

WADA 제안을 *가맹기구*가 논쟁하여 *CAS*가 결정했던지 상관없이) *가맹기구*가 지정된 날짜까지 모든 *재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늘어나거나 추가된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원 결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10.2.10 위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부록 B는 *중대한* 요건의 비준수 또는 오직 *우선순위*의 요건의 비준수 또는 오직 일반적인 요건의 비준수를 수반하는 사례에 소명 적용되는 차등되고 균형 잡힌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범위를 설정한다. 별첨 B 배후의 의도는 모든 사례에 있어서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부과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명시된 원칙들이 특정한 사례의 특정 사실이나 정황에 적용되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 해당 사례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의 또는 심지어 이 범위를 넘어서는 융통성이 적용된다. 특히, 비준수의 정도가 클수록(즉, *가맹기구*가 더 많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요건이 깨끗한 스포츠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을수록),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가중된다.

11.0 *재인가*

11.1 목적

11.1.1 일단 *가맹기구*가 비준수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가맹기구*가 지속적인 *규약준수*를 해내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보장하는 가운데 *가맹기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인가*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11.1.2 *WADA* 경영진은 *가맹기구*가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권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이끌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해당 목적에 있어서 해당 과정 그리고/또는 최종 결과의 무결성은 타협될 수 없다.

11.2 *재인가* 조건

11.2.1 *규약* 24.1.4항에 따라, *WADA*는 *가맹기구*에게 보내는 비준수 선언과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제시를 담은 공식 통지 내에 *재인가*를 위해 *가맹기구*가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바의 조건을 또한 명시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1.2.1.1 *가맹기구*가 비준수 한 것으로 선언되게 한 모든 요인들이 완전히 시정될 것

11.2.1.2 *가맹기구*가 *규약* 및 *국제표준*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준비, 의지 및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 여기에는 독립적으로 또는 외부의 부적절한 개입 없이 모든

*도핑방지활동*을 실시할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가맹기구*가 비준수한 것으로 선언되고 *재인가*를 하기 전에 추가적인 *부적합*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WADA*는 해당되는 새로운 *부적합*을 해결할 새로운 시정조치보고를 발부하며, 해당 *부적합*을 시정할 일반적인 절차 및 기간(8조에 제시된 대로)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가맹기구*는 *중대한* 또는 *우선순위*의 요건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부적합*을 시정하기 전까지는 *재인가* 되지 않을 것이다.

11.2.1.3 *가맹기구*는 자신이게 적용된 모든 *가맹기구* 시정조치를 완전히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인가* 후에도 적용되거나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는 제외이다.)

11.2.1.4 *가맹기구*는 *WADA*가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비용과 경비를 완전히 지불해야 한다.

(a) *WADA 가맹기구*의 비준수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으로 발생된 (즉, *WADA*의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과 경비를 제외한) 특정 비용과 경비 (예: 그러한 비준수를 파악한 *WADA* 정보조사부 또는 *WADA*와 계약한 제3자가 실시한 특정 조사의 비용)

(b) *가맹기구*가 비준수함을 최종 결정한 날로부터 *가맹기구*의 *재인가*일까지 *WADA* 그리고/또는 승인된 제3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경비. 여기에는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시행하는데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경비(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맹기구*가 *재인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는데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경비(*특별 모니터링*, 감독 또는 책임이전 및 *가맹기구 결과조치*에 대한 *가맹기구*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비용 포함)가 포함된다. 그리고

11.2.1.5 *가맹기구*는 해당 사례의 특정한 사실이나 정황을 바탕으로 *WADA* 집행위원회가 (CRC의 권고로) 명시하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1.2.2 *규약* 24.1.4항에 언급된 통지를 수령한지 21일 이내에, *규약* 24.1.6항에 따라 *가맹기구*는 *WADA*가 제시한 *재인가* 조건에 논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WADA*는 *규약* 24.1.6항에 따라 해당 사례를 *CAS* 일반중재과에 회부할 것이며 *CAS*는 *WADA*가 제시한 *재인가* 조건 전체가 필수적이며 과잉조치금지 원칙에 준한 것인지를 판결할

것이다.

11.2.3 *CAS*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재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비준수한 *가맹기구*는 *WADA*가 명시한 각각의 *재인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자신 고유의 노력으로 그러나 또한 필요시 정부기관 그리고/또는 다른 관련 기관의 지원과 도움을 얻어) 입증하도록 요구된다.

11.2.4 *WADA*는 (그리고/또는 *CAS*는) 11.2.1.4항에 명시된 비용과 경비의 분할납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가맹기구*가 해당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해당 현재 시점까지 충실히 납부를 해 온 것을 조건으로 *가맹기구*가 다른 모든 *재인가* 조건을 준수했다면 *재인가* 날짜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할납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기구 재인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가맹기구*는 *재인가* 이후에도 모든 남은 분할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우선순위*의 요건에 대한 새로운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11.3 *재인가* 과정

11.3.1 *WADA* 경영진은 *재인가* 조건을 충족하려는 *가맹기구*의 노력을 모니링할 것이며, *가맹기구*의 발전단계를 정기적으로 CRC에 보고할 것이다. 본 업무의 조력을 위해 준수감사 그리고 또는 기타 다른 준수 모니터링 도구가 활용될 수 있다.

11.3.2 *도핑방지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할 *가맹기구*의 권리가 박탈된 경우, CRC는 *WADA* 집행위원회에 *가맹기구*가 완전한 *재인가* 이전에 (특별모니터링 하에, 그리고/또는 승인된 제3자의 감독 하에) 해당 *도핑방지활동*의 특정 부분을 시행할 권리를 다시 부여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가맹기구*의 현재까지의 시정노력이 그러한 *도핑방지활동*을 스스로 충실히 시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에 관해 CRC가 *WADA* 경영진과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3.3 *WADA* 경영진이 *가맹기구*가 모든 *재인가*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CRC에 통보할 것이다. 만약 *가맹기구*가 모든 *재인가* 조건을 충족한 것에 관해 *WADA* 경영진과 의견이 일치한다면, CRC는 *WADA* 집행위원회가 *가맹기구*의 *재인가*를 확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11.3.4 *규약* 13.6항에 따라, CRC 그리고/또는 *WADA* 집행위원회가 *가맹기구*가 아직 *재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내린 결정은 9.6항에 따라 *가맹기구*에 의해 *CAS*에서 항소될 수 있다.

11.3.5 비준수한 것으로 선언된 *가맹기구*의 *재인가는* 오직 *WADA* 집행위원회에만 권한이 있다.

11.3.6 *가맹기구*의 *재인가* 이후, *WADA*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시기 동안 해당 *가맹기구*의 *규약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11.3.7 *WADA* 집행위원회는 *재인가*를 확정할 때, *재인가* 이후 *가맹기구*가 자신의 지속적인 *규약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준수할, CRC가 권고한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재인가* 이후 지정된 시기 내의 준수감사 실시가 포함할 수 있다.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건의 위반은 다른 새로운 *부적합*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12.0 경과 규정

12.1 2024년 4월 1일부로 계류 중인 절차

12.1.1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시정조치보고가 발송되었거나 비준수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2024년 4월 1일 이후 계속 계류 중인 경우 2023년 11월 16일 승인된 본 *국제표준* 개정판에 의해 도입된 절차 변경은 계류 중인 시정조치보고 그리고/또는 비준수 절차에는 해당 *가맹기구*에 이득이 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경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부록 A: 비준수 분류

규약 및 *국제표준*에 의해 *가맹기구*에게 부과되는 여러 서로 다른 요건들은 스포츠에서의 도핑 퇴치와 연관된 중요도에 따라 *중대한*, 또는 *우선순위*의, 또는 일반적인으로 분류된다. 세 가지 범주에 각각 하는 요건의 예시들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요건들도 아래에 나열된 예시로부터 유추하여 범주 하나로 분류되어야 한다. (즉, *우선순위*의 요건으로 아래에서 나열된 요건과 같이 스포츠에서의 도핑을 퇴치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은 *우선순위로* 분류한다, 등.) 분류는 우선*WADA*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맹기구*는 해당 분류에 논쟁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CRC와 *WADA* 집행위원회는 (CRC의 권고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논쟁이 유지되는 경우, *CAS*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A.1. 다음은 스포츠에서 도핑을 퇴치하는 데 일반적인 요건들의 일부 목록이다.

a. *교육국제표준* 5.5항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습자의 필요나 특정 요구에 맞는 *교육* 활동 조정

b. *교육국제표준* 5.6항에 따라 발달 단계에 특화되고 모든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미성년 학습자를 위한 *교육* 활동 맞춤화

c. *규약* 10.14에 따라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기간에 참가 금지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의 마련

d. 청문이나 항소 후 *선수*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규약* 14.3.4항에 따라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판결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e.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 6조 및 7조에 따라 관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조건을 이해했음을 서면이나 구두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f.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과 동 표준 4.5항에 따라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사생활/정보 보호법의 준수를 담당하는 자를 *도핑방지기구* 내에 지정하는 것

A.2. 다음은 스포츠에서 도핑을 퇴치하는 데 *우선순위*의 요건들의 일부 목록이다.

a. *교육국제표준* 6.2항에 따라 *교육* 계획의 목표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평가.

b. *교육국제표준* 6.1항 및 9.1(b)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알려주는 연간 평가 보고서

작성.

c. *교육국제표준* 5.8항에 따라 가치 기반 *교육* 및 규정 제18.2의 모든 주제에 능숙하며 대면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 훈련 및 승인.

d. *교육국제표준* 5.4항에 따라 *교육*그룹의 각 대상 그룹에 대한 학습 목표를 식별하는 학습 프레임워크의 확립(예: 국제 *교육* 표준 지침의 5장에 명시된 예시 프레임워크).

e. *규약* 5.7항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11조 및 12조에 따른 정보활동 및 조사 역량 개발 그리고 그 역량을 활용하여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추적할 능력

f.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5.4항에 따라 *선수*(그리고/또는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 제3자에게)에게 *시료*채취가 요구된다는 것을 통지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 실행하는 것

g.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7.4.5항에서 7.4.7항에 명시된 *선수*로부터 *시료*채취 과정의 문서화를 위한 요구사항 시행

h.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5.3.2항 및 부록 G에 따라 *시료*채취요원을 위한 훈련/인증/재인증 프로그램 시행

i.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5.3.2항 및 부록 G.4.2항, G.4.3항에 따라 *시료*채취요원의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정책 시행

j.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부록 A부터 부록 F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처리

k.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8조 및 9조의 요구사항에 따른 *시료*전달보관체계 시행

l. *결과관리 국제표준* 5.2항에 따른 비정형 분석결과 검토

m.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12.3항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잠재적 도핑방지 규정위반 조사 대상자와 그 조사에 따른 결과를 *WADA* 및 국제연맹에 적시에 통지

n. *규약* 14.5.2항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제5.5항에 따라 모든 *TUE*의 결정을 *ADAMS* 내에 발생일로부터 21일 내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보고

o. *규약* 14.3항에 따라 결정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사례의 결과 및 요구된 세부사항의 공개

p. 국제연맹은 *규약* 12조 및 20.3.2항에 따라 산하 국가*경기*연맹과 기타 회원의 정책과 규정, 프로그램이 *규약*에 부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q. (i) 본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11.2.1.4(a)항에 따라 *WADA* 조사 비용 (ii) *규약* 7.1.5항에 따른 *결과관리* 비용의 부담 요건

r. *국가도핑방지기구*는 *규약* 20.5.1에 따라 운영 결정 및 활동에 있어 스포츠 및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 사항.

s. *규약* 24.1.12.8(b)항에 따라 *가맹기구*가 해당 법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 그리고/또는 관련 개최계약에 따라 *규약* 비준수 *국가도핑방지기구*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역할을 하는 *규약* 비준수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국가에서 국제 *경기대회*를 개최하거나 공동 주최하기 위해 이전에 부여된 권리를 수혜자(누구든지)로부터 철회함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

A.3. 다음은 스포츠에서 도핑을 퇴치하는 데 *중대한* 요건들의 일부 목록이다.

a. *규약*23.2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규약*을 이행할 *가맹기구*의 의무에 부합하는 규칙과 규정, (필요할 경우) 법의 제정

b. *규약* 23.3항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1*규약*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자원을 충분히 투입할 *가맹기구* 의무의 충족

[주해: 객관적인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이 중요 요건의 구현은 단독으로 측정되지 않고 가맹기구가 다른 규약준수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c. *선수*가 *검사*보다는 *교육*을 통해 먼저 도핑방지 노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국제표준 규약* 18.2항 및 4조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계획*의 개발 및 구현.

d. *규약* 18.2항 및 *교육 국제표준*에 명시된 주제에 따라 *선수*와 기타 관계자에게 정확한 최신 정보를 가급적 홈페이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제공.

e.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4조에 명시된 원칙을 근거로 *규약*5.4항에 따라 효과적이고 지능적이며 균형 잡힌 *검사배분계획*을 개발하고 이행. 특히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i. 문서화된 위험도 평가의 개발 및 적용

ii. (해당될 경우) 균형잡힌 *검사대상명부*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완적인 *검사*풀의 수립과 처리를 포함한 효과적인 *경기기간 외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

iii. 종목별 특정 분석 *기술문서*를 준수하는 *검사*의 시행

iv. 사전미통지 *검사*

v. *결과관리 국제표준* 부록 C에 따른 승인된 *선수*수첩관리단의 이용

vi. *선수*가 올림픽, 패럴림픽 및/또는 기타 *주요 경기대회* 참가 전에 *검사*를 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4.8.12.5(a)항의 준수 포함)

f.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6.3.4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료*채취용품 사용

g. *규약* 6.1항에 따른 모든 *시료*의 분석

h.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9.3.2항에 따른 분석을 위한 적시 *시료* 운송

i. *규약* 6.7항, 분석기관 *국제표준* 5.3.4.5.4.8항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 5.1항 및 5.2항에 따라 B *시료* 분석에 적용되는 절차 요건(*선수*에게 적절하게 통보하여 분서기관에 출석하여 B *시료*의 개봉과 분석에 입회하게 하기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준수

j. *규약* 14.5.1항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4.9.1(b)항에 따라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내에 *ADAMS*에 모든 도핑*검사*서 입력

[주해: ADAMS에 DCF를 입력하는 것은 ADAMS에서 선수 생체 수첩을 업데이트하는 데 시기적절한 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소변 샘플에 대한 IRMS 분석을 수행하라는 자동 요청이 발생하거나 검토 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선수 수첩 관리부서가 발행한 스테로이드 또는 혈액 수첩의 경우, 선수에 대한 표적 검사 또는 원래 시료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물질(즉, 적혈구 생성 자극제)에 대한 회고적 분석이 필요하다.]

k.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른 *TUE* 위원회의 임명, *선수*가 *TUE* 위원회에 *TUE* 신청 또는 인정을 신청하는 문서화된 절차

l. *규약* 7조와 8조에 따라 모든 소재지정보 불이행 및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적절히, 적기에 처리. 특히 *규약* 7.2항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해당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정확히 통지하고 *규약* 8.1항에 따라 합당한 시일 내에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운영상 독립적인 청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청문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

m. A.3.(k)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i) *WADA*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례에서 *결과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규약* 7.1.5항의 요구사항; 그리고 (ii) 가맹이구가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WADA*가 지정한 다른 *도핑방지기구*가 *결과관리*를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상환하도록 하는 *규약* 7.1.5항의 요구사항

n. *규약* 7.6항과 14조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관련된 *결과관리* 활동을 모두 *WADA*와 타 *도핑방지기구*에게 통보

o. *규약* 7.4.1항에 따라 의무적 임시 *자격정지*의 부과

p. *규약* 24.1.2항과 24.1.3항에 따라 *규약준수*에 관해 보고할 요건.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 7.5항에 따라 *규약준수* 설문지에 응할 요건, 7.6항에 따라 의무적 정보요구에 응할 요건, 7.7항에 따라 준수감사를 받을 요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q. *규약* 15.1항에 따라 타 *가맹기구*, 국가중재기관(*규약* 13.2.2항) 또는 *CAS*에서 내린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을 인정하고 시행 및 자동 구속력 효과

r. *규약* 24.1.9항에 따라 타 *가맹기구*가 비준수임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의 인정 및 이행, 그리고 그러한 불이행에 대한 *결과조치* 그리고/또는 *재인가*하기 위해 *가맹기구*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의 인정 및 이행

s. *가맹기구*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한, *규약* 24.1.12.8(a)항에 따라 위 부록에 언급된 개최 권한을 철회하고 *경기대회*를 다른 국가에 재할당해야 하는 *가맹기구*의 요구 사항. 단, *가맹기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t. *규약* 24.1항에 따라 부과된 *가맹기구 결과조치* (*재인가* 후 충족되지 않은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충족해야 하는 비준수 *가맹기구*에 대한 요구 사항, 11.2.4항에 따른 분할납부 계획 대상이 되는 11.2.1.4항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 및 비용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u. *규약* 또는 *국제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WADA* 집행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중대한*' 요건을 부과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요건

부록 B: *가맹기구* 결과조치

본 부록 B는 *중대한* 요건을 비준수하거나 (B.3항 참조) 또는 *우선순위* 요건만 (B.2항 참조) 또는 일반적인 요건만 (B.1항 참조) 비준수와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등급의 범위 및 과잉금지원칙을 확인한다. 그 의도는 모든 경우에 *가맹기구 결과조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일관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조에 명시된 원칙을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특정사건에서 (예를 들어 *가맹기구*가 준수하지 못한 사항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요구사항 심각할 수록) 이 범위 내에서 또는 심지어 이 범위에 벗어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례에 하나 이상의 *중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가중요인도 포함된 경우 부과된 *가맹기구 결과조치*의 의미있는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된 경우, 이는 더 낮은 수준의 *가맹기구 결과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시작점은 다음을 따른다.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요건 비준수 사례에서 (그러나 *우선순위*의 또는 *중대한* 요건이 없는)

B.1.1. 첫번째 단계에서

a. *가맹기구*는 *WADA* 특권을 상실할 것이다.

b. *가맹기구*는 *WADA* 또는 승인된 제3자에 의해 (조언 및 정보 제공, 자원과 지침과 훈련 자료 개발, 그리고/또는 필요한 경우에 훈련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도핑방지활동*을 조력 받을 것이다. 1년에 2회의 현장 방문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은 (알려진 경우) *가맹기구*가 선불로 지불한다.

c.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는 (*WADA*가 지정하는 대로) *WADA*의 *특별 모니터링*을 받거나 또는 승인된 제3자의 감독을 받으며 비용은 *가맹기구*가 부담한다.

B.1.2. 만약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부과된 지 12개월 이내에 (또는 *WADA*가, 또는 논쟁된 경우 *CAS*가 명시한 다른 기간 내에) *가맹기구*가 B.1.1항에 따라 *재인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추가적인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a.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맹기구*의 비용 부담으로 승인된 제3자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여기에는 1년에 4회의 현장 방문이 포함될 것이다. 모든 비용은 (알려진 경우) 선불로 지불한다. 그리고

b. 해당 *가맹기구*의 대리인은 비준수 *가맹기구*가 *재인가* 될 때까지 다른 *가맹기구*(또는 회원 기관) 또는 *가맹기구* 협회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의 일원이 될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B.1.3. 만약 *가맹기구*가 B.1.1항에서 제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부과된지 24개월 이내에(또는 *WADA*가, 또는 논쟁된 경우 *CAS*가 명시한 다른 기간 내에) B.1.1항에 따라 *재인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추가적인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a.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의 전부가 *가맹기구*의 비용 부담으로 승인된 제3자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여기에는 1년에 최대 6회의 현장 방문이 포함될 것이다. 모든 비용은 (알려진 경우) 선불로 지불한다. 그리고

b. 해당 *가맹기구*의 대리인은 비준수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또는 1년동안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다른 *가맹기구*(또는 회원 기관) 또는 *가맹기구* 협회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의 일원이 될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c. (*가맹기구*가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종목이 아니며, IOC로부터 인정받지 않았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그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WADA* 정책에 따라 *가맹기구*로 유지된다면) *가맹기구*로서 *가맹기구*의 지위는 그러한 지위에 대해 지불된 모든 수수료 상환없이 종료될 것이다.

B.2. *우선순위*의 요건의 비준수 사례 (*중대한* 요건이 없는 경우)

B.2.1. 첫번째 단계에서

a. *가맹기구*는 *WADA* 특권을 상실할 것이다

b.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는 (*WADA*가 지정하는 대로) 승인된 제3자의 감독 또는 책임이전을 받으며 비용은 *가맹기구*가 부담한다. 여기에는 1년에 최대 6회의 현장 방문이 포함되며 모든 비용은 선불로 (알려진 경우) 지불한다.

c. *가맹기구*는 *벌금* 지불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d. 해당 *가맹기구*의 대리인은 비준수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다른 *가맹기구*(또는 회원 기관) 또는 *가맹기구* 협회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의 일원이 될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e. (*가맹기구*가 *국가도핑방지기구*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인 경우)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가맹기구*의 국가는 지역별, 대륙별,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올림픽 그리고/또는 패럴림픽을 포함한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를 개최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f. (*가맹기구*가 국제연맹인 경우)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가맹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리거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혜택을 누리거나 다른 어떠한 *가맹기구*의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한다.

g. (*가맹기구*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라면) *재인가* 되기 전까지 다음 회기의 해당 *경기대회*에서 *가맹기구*의 비용 부담으로 승인된 제3자가 *가맹기구*의 *도핑방지프로그램*을 *특별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거나 책임이전을 받을 것이다.

B.2.2. *가맹기구*가 B.2.1항에 명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 부과 12개월이내에(또는 *WADA* 또는 분쟁 시 *CAS*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재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a. 2년 동안 또는 비준수한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둘 중 더 긴 기간 적용) 해당 *가맹기구*의 대리인은 다른 *가맹기구*(또는 회원 기관) 또는 *가맹기구* 협회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의 일원이 될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b. *가맹기구*는 추가적인 *벌금*지불을 요구받을 수 있다.

c. (*가맹기구*가 *국가도핑방지기구*거나 *국가도핑방지기구*를 대행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일 경우) *가맹기구* 소속 국가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자*는 *재인가* 전까지 지역 및/또는 대륙 *선수*권 대회 및/또는 세계 *선수*권 대회 및/또는 올림픽 게임 및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 또는 참석에서 제외된다.

d. (*가맹기구*가 국제연맹인 경우):

1.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가맹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리거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혜택을 누리거나 다른 어떠한 *가맹기구*의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재인가* 이전의 규정 미준수 기간동안에도 소급하여 자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재인가* 전까지 국제연맹 *대표자*는 지역 및/또는 대륙별 *선수*권대회 및/또는 세계 *선수*권대회 및/또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상황에 따라 하계 또는 동계)에 참가 또는 참석하지 못한다.

e. (*가맹기구*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인 경우):

1.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가맹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리거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혜택을 누리거나 다른 어떠한 *가맹기구*의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재인가*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자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리고

2. 올림픽 및 패럴림픽 예선전을 겸하는 *경기대회*의 지위를 상실한다. // *재인가* 이전에 개최될 *가맹기구*의 향후 행사는 올림픽 게임 또는 패럴림픽 게임의 적격 *경기대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f. (*가맹기구*가 올림픽종목, 장애인올림픽 종목 이외의 주관단체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으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그에 의해 인정받지 아니하였으며, 적용가능한 *WADA* 정책으로 *가맹기구*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규약*에 따른 *가맹기구*로서의 해당 *가맹기구*의 지위는 그러한 지위를 위해 지불된 수수료에 대한 상환 자격 없이 종료될 것이다.

B.2.3. *가맹기구*가 B.2.1항에 따라 부과된 *가맹기구 결과조치* 이후 24개월 이내 *재인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WADA* 또는 분쟁 시 *CAS*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그러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a. (*가맹기구*가 *도핑방지기구* 또는 *도핑방지기구*를 대행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인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패럴림픽위원회 또는 해당 국가의 국가 *경기*연맹을 대표하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재인가* 전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그리고/또는 세계 *선수*권 그리고/또는 대륙 *선수*권에 참가 또는 참석하지 못한다. (10.2.6항 적용대상)

b. (*가맹기구*가 국제연맹인 경우) *가맹기구*의 종목(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재인가* 까지 다음 올림픽 및 패럴림픽 그리고/또는 기타 다른 종합 *경기대회*에 참가 또는 참석하지 못한다.

B.3. 하나 이상의 *중대한* 요건에 대한 비준수인 경우:

B.3.1. 첫번째 단계에서:

a. *가맹기구*는 *WADA* 특권을 상실할 것 이다.

b. *가맹기구*는 *벌금* 지불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c. *가맹기구*의 (*WADA*가 특정한) *도핑방지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는 승인된 제3자의 감독 또는 책임이전을 받으며 비용은 *가맹기구*가 부담한다. 여기에는 1년에 최대 6회의 현장 방문이 포함되며 모든 비용은 선불로 (알려진 경우) 지불한다.

d. 1년 동안 또는 비준수한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둘 중 더 긴 기간 적용) 해당 *가맹기구*의 대리인은 다른 *가맹기구*(또는 회원 기관) 또는 *가맹기구* 협회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의 일원이 될 자격을 상실할 것 이다.

e. (비준수 *가맹기구*가 *도핑방지기구* 또는 *도핑방지기구*를 대행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인 경우):

1. 특정 기간 동안 다른 *가맹기구*는 (i)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맹기구*의 국가에서 지역, 대륙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를 조직, 승인, 인정 또는 기타 달리 연관되거나 자신이 연관되도록 할 수 없거나 (ii) 자신의 구성원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치 못한다. 그리고/또는

2. 동일 또는 다른 기간 동안 다른 *가맹기구*는 누구에게도 비준수 *가맹기구*의 국가에서 향후 지역, 대륙, 또는 세계 *선수*권 대회 또는 기타 국제 행사를 주최할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구성원이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지 못한다).

3.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국가의 국기가 표시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전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맹기구* 국가의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자*의 참가 또한 참석을 제외하며 (10.2.6항 적용대상)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또는 해당 국가의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 또는 국가연맹을 대표하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재인가*까지 해당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주최하는 지역, 대륙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 또는 기타 국제 *경기대회* (다시 말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제외)에 참가나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4. (올림픽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장애인 올림픽과

관련하여)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국가의 국기가 표시되거나 *대표자*들과 함께 또는 *대표자*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맹기구*국 국가의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대표자*를 *재인가* 전까지 올림픽게임 및 장애인올림픽 참가 또는 참석대상에서 제외한다.

f. (*가맹기구*가 국제연맹인 경우):

1. *가맹기구*의 *대표자*는 아래 나열된 대회에 참가 또는 참석할 수 없으며, *가맹기구*의 종목(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각각의 경우 *재인가*시점까지 지역별, 대륙별, 또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또는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올림픽 및 패럴림픽 이외의 *경기*)에 참가 또는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

2. *재인가*시점까지 *가맹기구*의 *대표자*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그리고/또는 기타 다른 종합*경기대회*에 참가 또는 참석하지 못 한다.

g. (*가맹기구*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인 경우):

1. *재인가*될 때까지 *가맹기구*의 비용으로 *가맹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도핑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또는 책임이전이 있을 것이다.

2. *재인가*되기 전까지 *가맹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리거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혜택을 누리거나 다른 어떠한 *가맹기구*의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재인가*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자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도록 허용되지 않음)

h. (*가맹기구*가 올림픽종목 및 장애인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으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그에 의해 인정받지 않았으며, 적용가능한 *WADA* 정책으로 *가맹기구* 지위를 유지한 경우) *규약*에 따른 *가맹기구*로서의 해당 *가맹기구*의 지위는 그러한 지위를 위해 지불된 수수료에 대한 상환 자격 없이 종료될 것이다.

B.3.2. 만약 *가맹기구*가 B.3.1항에서 제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부과된 지 12개월 이내에 (또는 *WADA*가, 또는 논쟁된 경우 *CAS*가 명시한 다른 기간 내에) *재인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추가적인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a. 4년 또는 비준수한 *가맹기구*가 *재인가*되기 전까지 (둘 중 더 긴 기간 적용) 해당

*가맹기구*의 대리인은 다른 *가맹기구*(또는 회원 기관) 또는 *가맹기구* 협회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의 일원이 될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b. (만약 *가맹기구*가 *국가도핑방지기구*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인 경우)

1. *가맹기구*의 국가는 지역, 대륙, 또는 세계 *선수*원대회,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 그리고/또는 올림픽 그리고/또는 패럴림픽을 특정기간동안 개최할 수 없다. 그리고

2. (10.2.6항 적용대상) 국가를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패럴림픽위원회 또는 해당 국가의 국가*경기*연맹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가맹기구*의 *재인가* 시점까지 지역, 대륙, 또는 세계 *선수*권 대회, 또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포함하는 기타 *국제경기대회*에 (B.3.1항에 의거하여 이미 그러한 경우)참가 또는 참석하지 못한다.

c. (*가맹기구*가 국제연맹인 경우):

1. *가맹기구*의 종목(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재인가*시점까지 참가 또는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2. *재인가*되기 전까지 *가맹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리거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혜택을 누리거나 다른 어떠한 *가맹기구*의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재인가*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자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d. (*가맹기구*가 *주요 경기대회* 주관단체인 경우):

1. *재인가*되기 전까지 *가맹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자금 지원 및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리거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혜택을 누리거나 다른 어떠한 *가맹기구*의 인정을 받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재인가* 이전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자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리고

2.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예선전으로서의 *가맹기구*의 *경기대회* 지위를 상실한다. 그리고

e. *가맹기구*는 추가적인 *벌금*지불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f. 특정 기간 동안(*재인가* 후 해당 기간에 대한 해당 자금 및/ 또는 기타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권리가 있거나 없는 경우) *가맹기구*로부터 일부 또는 모든 공공 자금 및/ 또는 기타 혜택을 보류하도록 관련 공공 기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B.3.3. 만약 *가맹기구*가 B.3.1항에서 명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부과된 지 24개월 이내에 (또는 *WADA*가, 또는 반박이 있는 경우 *CAS*가 명시한 다른 기간 내에) *재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종목 및/또는 패럴림픽 종목의 회원으로서의 인정 및/또는 다른 *가맹기구*에 의한/회원의 인정 정지 등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B.4. 본 부록 B에 명시된 *가맹기구 결과조치*가 *국가도핑방지기구*(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규약* 상 *대표자*의 정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 *도핑방지기구*국가 올림픽 위원회의 임원, 이사, 임원, 선출된 회원, 직원 및 위원회 위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도핑방지기구*/*국가올림픽위원회*의 국가 *대표자*에게도 적용된다. 본 부록 B에 명시된 결과를 적용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 *대표자*에는 (i) 결과가 부과되는 시점 및/또는 (ii) 불이행이 발생하여 *결과조치*가 부과되는 기간 중 언제든지 (단, 결과는 더 넓은 적용이 불균형한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도록 제한될 수 있음) 다음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국가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및/또는 사법부(예: 연방, 단일, 군주제)의 구성원(직위와 상관없음)

1. 국가 원수
2. 대통령, 대통령실의 구성원, 기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위해 일하는 사람
3. 부통령
4. 국무총리 및 부총리
5. 내각 구성원, 국무장관, 장관 및 차관
6. 정부 기관 또는 관련 국가 정부의 기타 구성 기관이나 기관의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무원의 고위 구성원 그러한 사람의 조수/고문,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 외교적 지위를 가진 모든 공무원.
7. 국가 정부의 권한 하에 조직된 국영 스포츠 기관, 센터 또는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8. 군주일가의 구성원
9. 공식적인 입법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예: 의회/ 국회(또는 유사한) 또는 해당 기관의 모든 부서(예: 다른 의회)의 구성원)
10. 모든 주 법원(연방, 지역 또는 지방)의 판사

b. 정부 보안 기관의 구성원

c. 모든 주 수사 당국의 구성원

d. 군/군대 대장 이상의 장교, 그리고

e. 모든 경찰서에서 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경찰관,

단, 항상 (1)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그들이 해당 *경기대회* 또는 대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순수 자격으로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으로서 참석 또는 참가하려는 경우 해당 스포츠 *경기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된 정의에서 제외되며 (2) 개인적 자격으로 IOC 및/또는 IPC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도 이러한 정의에서 제외되며, 또한 (ii) 개최국의 국가 원수 또는 총리가 특정 *경기대회*에 초대한 사람도 이러한 정의에서 제외된다.